

1.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3.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4.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검 토 보 고 서

## I.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2513호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제2514호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제2515호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 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제2430호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21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의해 제출되어 2021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II.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 1. 주요내용

#### 가. 세입·세출 결산

-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1조 2,810억 8천 4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0조 6,076억 2천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6,734억 6천 4백만원임.

이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642억 2천 4백만원 및 사고이월액 2,829억 3천 1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63억 9백만원임.

#### 나. 채권현재액

- 2020회계연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2,347억 8백만원으로 2019회계연도말 2,807억 6천 6백만원 보다 460억 5천 8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다. 채무결산

- 2020회계연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3,161억 7천 7백만원으로 2019회계연도말 3,161억 7천 7백만원과 비교하여 증감이 없이 동일함.

## 라. 재무회계 결산

- 2020회계연도말 재무회계상 총자산은 15조 9,054억 3천 5백만원으로 2019회계연도말 15조 5,421억 2천 1백만에 비해 3,633억 1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산내용은 유동자산 1조 4,734억 2천 9백만원, 투자자산 1,951억 1천 7백만원, 유형자산 14조 2,050억 8천 2백만원, 무형자산 1억 9천 7백만원, 기타비유동자산 316억 1천만원임.

- 2020회계연도말 재무회계상 총부채는 1조 114억 2천 2백만원으로 2019회계연도말 1조 717억 4천 4백만원에 비해 603억 2천 2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결산내용은 유동부채 1,375억 2천 1백만원, 장기차입부채 8,484억 8천 9백만원, 기타비유동부채 254억 1천 2백만원임.

- 2020회계연도말 재무회계상 순자산은 14조 8,940억 1천 3백만원으로 2019회계연도말 14조 4,703억 7천 7백만원에 비해 4,236억 3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산내용은 고정순자산 13조 2,865억 6백만원, 특정순자산 619억 3천 8백만원, 일반순자산 1조 5,455억 6천 9백만원임.

-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4,236억 3천 6백만원으로 2019회계연도 1조 168억원에 비하여 5,931억 6천 4백만원 감소하였으며,

결산내용은 수익 10조 7,958억 6백만원, 비용 10조 3,721억 7천만원임.

## 2. 검토의견

### 가. 결산총괄

-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예산액 10조 7,684억 3천 9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874억 4천 1백만원을 더한 11조 2,558억 8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4,809억 6천만원(4.1%) 증가하였음.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1조 2,558억 8천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이 11조 2,810억 8천 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0.2%이고,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보다 1억 1천 9백만원이 감소된 1억 1천 1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12억 7천 3백만원이 증가된 142억 3천 9백만원임.

[표-1] 세입결산 총액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액 (결산액) ③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예산현액 대비수납		징수결정 대비수납	
						증감 (③-①)	수납률 (③/①)	증감 (③-②)	수납률 (③/②)
2020	11,255,880	11,295,434	11,281,084	111	14,239	25,204	100.2	△14,350	99.9
2019	11,736,840	11,849,791	11,836,595	230	12,966	99,754	100.8	△13,196	99.9
2018	10,488,409	10,926,900	10,912,569	571	13,760	424,160	104.0	△14,331	99.9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2%인 10조 6,076억 2천만원으로 전년도(93.4%) 대비 0.8% 증가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전년도 4.2%)인 3,471억 5천 5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6%(전년도 2.4%)인 3,011억 5백만원임.

[표-2] 세출결산 총액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 산 현 액 ①	결산액 ② (②/①)	다음연도 이월액 ③ (③/①)	집행잔액 ④=①-②-③ (④/①)
<b>2020</b>	<b>10,768,439</b>	<b>487,441</b>	<b>11,255,880</b>	<b>10,607,620</b> <b>(94.2)</b>	<b>347,155</b> <b>(3.0)</b>	<b>301,105</b> <b>(2.6)</b>
2019	11,194,696	542,145	11,736,841	10,968,011 (93.4)	487,441 (4.2)	281,389 (2.4)
2018	10,051,522	436,887	10,488,409	9,600,564 (91.5)	542,145 (5.2)	345,701 (3.3)

- 한편 세입·세출 차감액인 세계잉여금은 6,734억 6천 4백만원으로 여기서 다음연도 이월액 3,471억 5천 5백만원(예산현액 대비 3%)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263억 9백만원(예산현액 대비 2.9%)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811억 4천 3백만원보다 548억 3천 4백만원(14.4%) 감소함.

[표-3]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19	증감
최종예산(A)	<b>10,768,439</b>	11,194,696	△426,257
전년도이월액(B)	<b>487,441</b>	542,144	△54,703
예산현액(C=A+B)	<b>11,255,880</b>	11,736,840	△480,960
세입결산액(D)	<b>11,281,084</b>	11,836,595	△555,511
세출결산액(E)	<b>10,607,620</b>	10,968,011	△360,391
세계잉여금(F=D-E)	<b>673,464</b>	868,584	△195,120
명시이월비	<b>64,224</b>	185,535	△121,311
사고이월비	<b>282,931</b>	301,906	△18,975
계 속 비	<b>0</b>	0	0
국고보조잔액	<b>10,210</b>	0	10,210
지방채상환	<b>0</b>	0	0
순세계잉여금(G)	<b>326,309</b>	381,143	△54,834
순세계잉여금률(G/C)	<b>2.9</b>	3.2	0

## 나. 세입결산

-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0.2%로 전년도(100.8%) 보다 0.6%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11조 2,954억 3천 4백만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9%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임.

### 1) 세입재원별 결산

- 세입재원별 결산액은 11조 2,810억 8천 4백만원으로, 이전수입이 90.3%, 자체수입 2.0%, 기타수입 7.7%로 구성되어 있음.
-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지난년도 보다 5,555억 1천 1백만원 감소하였는바, 이중 이전수입은 1,233억 7천 1백만원(1.2%) 감소한 반면 자체수입은 112억 8천 1백만원(5.3%) 증가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4,434억 2천 1백만원(33.8%) 감소하였음.

[표-4] 전년대비 세입 결산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19			전년 대비 증감	
	예산현액 ①	수납액 ②	수납률 (③=②/ ①)	예산현액 (A)	수납액 (B)	수납률 (C=B/A)	수납액 (가=②-B)	비율 (나=가/B)
합 계	11,255,880	11,281,084	100.2	11,736,841	11,836,595	100.8	△555,511	△4.7
이 전 수 입	10,209,585	10,187,780	99.79	10,266,192	10,311,151	100.4	△123,371	△1.2
자 체 수 입	177,711	224,720	126.45	158,643	213,438	134.5	11,282	5.3
지방교육채	-	-	-	-	-	-	-	-
이월금	868,584	868,584	100.0	1,312,006	1,312,006	100.0	△443,421	△33.8

- 이처럼 세입결산액의 주된 감소요인은 전년도 이월금의 감소가 주된 요인인바, 2019회계연도에 지방교육채 8,529억 6천 7백만원을 조 기상환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3,887억 1천 9백만원 감소되었기 때문임.

[표-5] 최종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18	증감
최 종 예 산 ①	11,194,696	10,051,522	1,143,174
전 년 도 이 월 액 ②	542,145	436,887	105,258
예 산 현 액 ③ = ① + ②	11,736,841	10,488,409	1,248,432
세 입 결 산 액 ( 수 납 액 ) ④	11,836,595	10,912,569	924,026
세 출 결 산 액 ( 지 출 액 ) ⑤	10,968,011	9,600,564	1,367,447
결 산 상 잉 여 금 ⑥ = ④ - ⑤	868,584	1,312,005	△443,421
명 시 이 월 액 ⑦	185,535	183,598	1,937
사 고 이 월 액 ⑧	301,906	358,547	△56,641
순 세 계 잉 여 금 ⑩ = ⑥ - ( ⑦ + ⑧ )	381,142	769,861	△388,719

○ 한편 감소한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대비 4,861억 9천만원 감소한 5조 9,924억원으로 전체 이전수입의 53.1%(전년도 54.7%)를 차지함.

○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교부율의 인상(20.46%→20.79%)<sup>1)</sup>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등 경제여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의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건 변화에 따른 내국세 수입 감소 및 감교부 등에 따라 전년대비 각각 7,301억 4천 5백만원과 417억 2천 4백만원 감소한 반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증액교부금 1,202억 5천만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편성·증가하였음.

-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무선인프라구축 및 운영, 교원용노후PC 교체, 유치원운영한시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1,214억 1천만원)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전년도보다 1,669억 7천5백만원 증가하였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이 전년대비 15억 4천 6백만원 감소하였음.
- 한편 이전수입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법정이전수입은 고교무상교육경비전입금 등이 포함되어 전년대비 3,741억 2천 2백만원 증가하였으나, 비법정이전수입은 전년대비 122억 3천만원 감소하였음.
- 이처럼 2020회계연도의 세입예산 중 이전수입 규모의 감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이 당초 확정교부될 금액보다 각각 2,680억 1천 9백만원<sup>2)</sup>, 35억 2천 3백만원<sup>3)</sup>이 감소하여 교부되었기 때문인바,

이와 같이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의 세입구조 상 현재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세입결손 등 재정여건이 유동적인 만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적정 재원의 확보와 그에 따른 세출 조정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2) '2020회계연도 제3차 정부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수정확정교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2678,2020.4.9

3) '2020학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수정 확정 교부액안내',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2466, 2020.7.10.



[표-6] 전년대비 이전수입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19			전년 대비 증감	
	예산현액 (A)	수납액 (B)	수납률 (C=B/ A)	예산현액 (가)	수납액 (나)	수납률 (다=나/ 가)	수납액 (B-나)	수납률 (C-다)
합 계	11,255,880	11,281,084	100.22	11,736,840	11,836,595	100.85	△555,511	△0.63
이 전 수 입	10,209,585	10,187,780	99.79	10,266,193	10,311,151	100.44	△123,371	△0.6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221,406	5,216,971	99.92	5,860,899	5,868,590	100.13	△651,619	△0.22
국고보조금	198,165	191,846	96.81	26,374	24,872	94.30	166,974	2.51
특별회계전입금	594,703	583,583	98.13	588,049	585,129	99.50	△1,546	△1.37
법정 이전수입	3,844,040	3,840,624	99.91	3,460,891	3,466,502	100.16	374,122	△0.25
비법정이전수입	319,425	318,022	99.56	311,474	330,252	106.03	△12,230	△6.47
민간이전수입	27,575	32,844	119.11	14,548	31,957	219.67	887	△100.56
자치단체간이전수입	4,271	3,890	91.08	3,958	3,849	97.25	41	△6.17

[표-7] 세입 자원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과 목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액(결산액)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 ③	구성비율	증감 ③-①	수납률 ③/①		
합 계	11,255,880	11,295,434	11,281,084	100.00	25,204	100.22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교육 재정보조금	보통교부금	4,903,652	4,903,652	4,903,652	43.47	0	100.00
		특별교부금	197,504	193,069	193,069	1.71	△4,435	97.75
		중액교부금	120,250	120,250	120,250	1.07	0	100.00
		소 계	5,221,406	5,216,971	5,216,971	46.25	△4,435	99.92
	국 고 보 조 금	198,165	191,846	191,846	1.70	△6,319	96.81	
	특 별 회 계 전 입 금	594,703	583,583	583,583	5.17	△11,120	98.13	
	계	6,014,273	5,992,400	5,992,400	53.12	△21,873	99.64	

(단위 : 백만원, %)

과 목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액(결산액)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 ③	구성비율	증감 ③-①	수납률 ③/①	
자치단체이전수입	법정	지방교육세	1,824,083	1,824,083	1,824,083	16.17	0	100.00
		담배소비세	254,074	254,074	254,074	2.25	0	100.00
		시도세	1,633,451	1,633,451	1,633,451	14.48	0	100.00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13,822	13,822	13,822	0.12	0	100.00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98,492	95,077	95,077	0.84	△3,415	96.53
		교육급여보조금	8,660	8,660	8,660	0.08	0	100.00
		무상교육경전입금	11,457	11,457	11,457	0.10	0	100.00
		소계	3,844,040	3,840,624	3,840,624	34.04	△3,416	99.91
	비법정	광역자치단체	221,811	220,409	220,409	1.95	△1,402	99.37
		기초자치단체	97,614	97,614	97,614	0.87	0	100.00
		소계	319,425	318,022	318,022	2.82	△1,403	99.56
	계		4,163,465	4,158,647	4,158,647	36.86	△4,818	99.88
	기타이전수입(기타지원금)		31,846	36,734	36,734	0.33	4,888	115.35
자체수입	교수학습 활동수입	기본적 교육수입	103,151	102,317	102,129	0.91	△1,022	99.01
		선택적 교육수입	810	302	302	0.00	△508	37.28
	행정활동수입		3,951	2,874	2,842	0.03	△1,109	71.93
	자산수입	자산임대	452	556	519	0.00	67	114.82
		자산매각대	14,810	12,060	10,263	0.09	△4,547	69.30
	이자수입		7,101	13,911	13,911	0.12	6,810	195.90
	금융자산 회수	융자금원금	21,660	32,596	32,596	0.29	10,936	150.49
		보증금	350	17	17	0.00	△333	4.86
	기타수입	제재금	731	1,515	1,118	0.01	387	152.94
		기타	24,103	60,581	60,457	0.54	36,354	250.83
		과년도	593	12,341	565	0.01	△28	95.28
	계		177,711	239,070	224,720	1.99	47,009	126.45
	지방교육채		0	△	-	-	-	-
기타 (전년도이월금)		868,584	868,583	868,583	7.70	△1	100.00	

## 2) 불납결손액

- 2020회계연도의 불납결손액은 1억 1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불납결손액 2억 3천만원보다 1억 1천 9백만원(51.7%) 감소하였으며, 불납결손률은 0.1% 감소함.
-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수업의 지연과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자퇴 및 제적 등에 따른 수업료의 불납결손이 발생하지 않았고, ‘지난년도 수업료’ 만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 이처럼 고교무상교육의 전면시행으로 향후 수업료에 대한 불납결손은 발생할 여지가 없어졌으나, 지난년도 미수납액 및 연체료 등 제재금수입에서 시효완성 등에 따른 불납결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불납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수입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표-8] 소관별·사유별 불납결손액

(단위 : 백만원, %)

과목			2020			2019			증 감 (B-D)
			징수 결정액 (A)	불납결손액		징수 결정액 (C)	불납결손액		
				금액(B)	비율 (B/A)		금액 (D)	비율 (D/C)	
자체수입 합계			114,612	111	0.1	112,758	230	0.2	△119
교수-학습 활동수입	기본적 교육수입	수업료	101,934	-	-	99,797	5	0.0	△5
		지난년도 수업료	337	111	32.9	468	110	23.5	1
기타수입	과년도수입		12,341	-	-	12,493	115	0.9	△115

(단위 : 천원, %)

과목	불납결손액		사 유 별			비고 (결손내역)
	금액	비율	거소불명	시효완성	기타	
합 계	110,984	100.0	66	95,267	15,651	
지난년도 수업료	<b>110,984</b>	<b>100.0</b>	<b>66</b>	<b>95,267</b>	<b>15,651</b>	-고등학교 지난년도 수업료 : 110,918 -유치원 지난년도 수업료; 66

### 3) 미수납액

○ 미수납액은 142억 3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129억 6천 7백만원(6.7%) 보다 12억 7천 2백만원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은 미수납액의 증가는 ‘토지매각’의 미수납액(17억 8천 9백만원)이 전년도 ‘토지매각’ 미수납액(6백만원)보다 314.3%(17억 8천 3백만원) 증가했기 때문임.

#### [표-9] 미수납액 주요 증가 현황

(단위 : 백만원)

징수기관	세입 과목	징수 결정액	불납 결손액	수납액	미수납액	내역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토지매각	1,783	0	0	1,783	흑석9구역(서울은로초) 토지매각대금 잔금 징수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토지매각	6	0	0	6	공유재산(토지) 제5회차 매각대금 납입고지(북아현동 3-489)
합계		1,789	0	0	1,789	

○ 미수납액의 사유별 원인을 살펴보면, ‘채무자 채력부족’이 40억 9백만원(28.2%), ‘재산압류중’이 25억 9천 3백만원(18.2%), ‘납부자 태만’이 22억 7천 2백만원(16.0%), ‘채무자 거소불명’이 1억 1천 9백만원(0.8%), ‘채무자 징수유예’가 2백만원(0.01%), ‘기타’ 52억 4천 4백만원(36.8%) 등임.

- 이 중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인한 미수납액은 전년도 미수납액 대비 1억 9천 1백만원(4.5%) 감소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인한 미수납액은 전년도 미수납액 대비 889.4%(47억 1천 4백만원) 증가한 52억 4천 4백만원에 달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기타 사유’로 인한 미수납액의 증가는 흑석 9구역에 위치한 서울은로초의 토지매각대금이 조합의 내부 사정으로 계약보증금 납부 후 잔금 90%(17억 8천 3백만원)를 미납함에 따른 것임.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매각대금이 계속해서 미납되지 않도록 연체료 등의 징수대책을 통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채무자 실제 재력 및 거소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표-10] 미수납액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 수 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C)	미수납액 (D=A-B-C)			미수납 내역
				금액	미수납율	구성 비율	
<b>합계</b>	<b>191,887</b>	<b>177,537</b>	<b>111</b>	<b>14,239</b>	<b>7.4</b>	<b>100.0</b>	
교수-학습 활동수입	입학금	47	47	0	0.0	0.0	- 유치원 입학금 : 10천원
	수업료 (지난연도 수업료)	102,270	102,082	111	77	0.1	- 고등학교 수업료 : 1,318천원 - 유치원 수업료 : 1,867천원 - 고등학교 수업료 : 74,317천원
행정활동 수입	사용료 수입	2,545	2,513	0	32	1.3	- 토지사용료 : 32,182천원
자산수입	임대료 수입	556	519	0	37	6.7	- 대부료 : 36,985천원
	토 지 매 각	12,004	10,215	0	1,789	14.9	- 공유재산 매각대금 : 1,789,043천원
	기타유형 자산매각	28	20	0	8	28.6	- 불용물품 매각대금 : 7,808천원

기타 수입	제재금수입	변 상 금	546	253	0	293	53.7	2.1	-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 292,846천원
		위 약 금	579	550	0	29	5.0	0.2	- 학원 과태료 체납 가산금 : 83천원 -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한 보증금 및 공사 지연배상금 : 29,297천원
		연 체 료	202	160	0	42	20.8	0.3	- 변상금연체료 : 28,198천원 - 학원과태료연체료 : 13,915천원 - 도서연체료 : 2천원
		과 태 료	188	155	0	33	17.6	0.2	- 학원과태료 : 32,888천원
	기타수입	60,581	60,458	0	123	0.2	0.9	- 소송비용액 : 55,802천원 - 공익제보자 구조금 : 11,050천원 - 환수액 : 658천원 - 토지매각 및 대부료 분납이자 : 301천원 - 예산잔액 반납 : 54,647천원 - 계약보증금 등 : 1,049천원	
	과년도수입	12,341	565	0	11,776	95.4	82.7	- 대지료 및 분할납부금 : 163,449천원 - 변상금 및 분납이자 : 6,571,567천원 - 소송비용액 : 536,966천원 - 학원과태료 : 474,548천원 - 위약금 : 2,283,419천원 - 부당이득금 외 : 1,745,266천원	

[표-11]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	미수 납액	사 유 별											
		채무자 징수유예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납부자 태 만		재 산 압류중		기 타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20	14,239	2	0.0	119	0.8	4,009	28.2	2,272	16.0	2,593	18.2	5,244	36.8
2019	12,966	70	0.5	205	1.6	4,200	32.4	4,267	32.9	3,695	28.5	530	4.1
증감	1,273	△68	△0.5	△86	△1.6	△191	△4.2	△1,995	△17.0	△1,102	△10.3	4,714	32.7

## 다. 세출결산

- 2020회계연도 최종예산액은 10조 7,684억 3천 9백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4,874억 4천 1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1조 2,558억 8천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조 6,076억 2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2%가 집행되었는바, 이는 전년도(10조 9,680억 1천 1백만원) 집행률(93.4%) 보다 0.8% 증가된 것임.

[표-12]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①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②	비율 (②/①)	금액③	비율 (③/①)	금액④	비율 (④/①)
2020	11,255,880	10,607,620	94.2	347,155	3.1	301,105	2.7
2019	11,736,840	10,968,011	93.4	487,441	4.2	281,389	2.4
증감	△480,960	△360,391	0.8	△140,286	△1.1	19,716	0.3

- 정책사업별 결산액을 살펴보면 ‘유아및초중등교육’ 이 전체의 97.3%(전년도 89.3%)를 차지하는 10조 3,237억 8천 5백만원으로, 이 중 ‘인적자원운용’ 4조 5,972억 3천만원(43.3%), ‘학교재정지원관리’ 2조 2,735억 2백만원(21.4%), ‘교육복지지원’ 1조 7,720억 5천 4백만원(16.7%)의 순으로 지출되었음.
- 이와 같이 ‘유아및초중등교육’ 의 비중이 전년도 보다 8% 증가한 것은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 및 방역물품 지원, 공·사립학교 운영비 지원, 학교감염병관리 등의 예산이 4차례의 추경을 통해 반영됨에 따른 것임.

[표-13] 정책사업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비율(B/A)	구성비		비율(C/A)		비율(D/A)	
합 계	11,255,880	10,607,620	94.2	100.0	347,155	3.1	301,105	2.7
유아 및 초·중등교육	10,940,916	10,323,785	94.4	97.3	337,787	3.1	279,344	2.6
인적자원운용	4,648,711	4,597,230	98.9	43.3	151	0.0	51,330	1.1
교수-학습활동지원	697,009	661,455	94.9	6.2	3,850	0.6	31,704	4.5
교육복지지원	1,842,821	1,772,054	96.2	16.7	150	0.0	70,617	3.8
보건/급식/체육활동	233,027	181,840	78.0	1.7	40,606	17.4	10,581	4.5
학교재정지원관리	2,295,415	2,273,502	99.0	21.4	0	0.0	21,913	1.0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223,933	837,704	68.4	7.9	293,030	23.9	93,199	7.6
평생·직업교육	30,812	29,678	96.3	0.3	100	0.3	1,034	3.4
평생교육	30,120	29,023	96.4	0.3	100	0.3	997	3.3
직업교육	692	655	94.7	0.0	0	0.0	37	5.3
교육일반	284,152	254,157	89.4	2.4	9,268	3.3	20,727	7.3
교육행정일반	115,167	103,705	90.0	1.0	2,602	2.3	8,860	7.7
기관운영관리	56,108	41,891	74.7	0.4	6,666	11.9	7,551	13.5
지방채상환및리스료	109,843	108,494	98.8	1.0	0	0.0	1,349	1.2
예비비 및 기타	3,034	67	2.2	0.0	0	0.0	2,967	97.8

○ 주요 정책사업별 결산액의 추이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살펴볼 경우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사업이 전년 대비 7.9%(8,706억 9천만원) 감소하였는바, 이는 2019년도에 비해 2020년도에는 지방교육채 원금 상환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임.

○ 한편, ‘교육복지지원’, ‘교수-학습활동지원’, ‘보건/급식/체육활동’, ‘학교재정지원관리’ 등의 사업은 전년 대비 7.4%(6,534



억 1천 2백만원) 증가된 4조 8,888억 5천 1백만원으로,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등교수업 미실시 등으로 각종 사업이 축소·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세정제, 열화상카메라 등의 방역물품 구입과 방역인력 지원, 감염병 차단시설 등의 설치와 같은 직접적인 방역활동 지원 사업비와 온라인학습 지원, 긴급돌봄 확대, 급식일수 조정에 따른 바우처 지원 등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사업비가 총 4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가했기 때문임.

○ 반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은 전년도 대비 0.2%(536억 4천 9백만원) 감소된 8,377억 4백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는 전년도 본예산 보다 17.5%증액(1,179억 4백만원)하여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사 일정 조정 등의 사유로 회계연도 내 학교공사의 집행불가, 사업물량 감소 및 사업 일정 지연에 따른 불용예상액 반영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감소함에 따른 것임.

- 다만, ‘보건/급식/체육활동’ 중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의 5.6%(전년도 5.8%)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의 7.6%(전년도 8.5%)가 불용되었는바,

시설사업비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공사중단 및 지연 등으로 연도 내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들을 4차례의 추경을 통해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전년도와 비슷한 불용액의 발생한 것은 추경편성 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추경안 제출시 정확한 추계와 함께 과도한 예산 반영으로 세출재원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의 17.4%(406억 6백만원)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의 23.9%(2,930억 3천만원)는 공기 부족 등의 이유로 막대한 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바,

공사기간이 필요한 시설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만 하고 실제공사는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관행적인 이월행위는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이월사업이 무분별하게 남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표-14] 주요 정책사업별 결산액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19		증 감	
	결산액	구성비	결산액	구성비	금액	비율
<b>세출 결산액</b>	<b>10,607,620</b>	<b>100.0</b>	<b>10,968,011</b>	<b>100.0</b>	<b>△360,391</b>	<b>0.0</b>
유아 및 초·중등교육	10,323,785	97.32	9,790,798	89.3	532,987	8.0
인적자원운용	4,597,230	43.34	4,664,006	42.52	△66,776	0.8
교수·학습활동지원	661,455	6.24	527,076	4.81	134,379	1.4
교육복지지원	1,772,054	16.71	1,570,462	14.32	201,592	2.4
보건/급식/체육활동	181,840	1.71	140,594	1.28	41,246	0.4
학교재정지원관리	2,273,502	21.43	1,997,307	18.21	276,195	3.2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837,704	7.90	891,353	8.13	△53,649	-0.2
평생·직업교육	29,678	0.28	28,872	0.26	806	-0.1
평생교육	29,023	0.27	28,133	0.26	890	-0.1
직업교육	655	0.01	739	0.01	△84	0.0
교육일반	254,157	2.40	1,148,341	10.47	△894,184	-8.1
교육행정일반	103,705	0.98	117,360	1.07	△13,655	-0.2
기관운영관리	41,891	0.39	51,797	0.47	△9,906	-0.2
지방채상환및리스크	108,494	1.02	979,184	8.93	△870,690	-7.9
예비비 및 기타	67	0.00	0	-	67	

- 세출 성질별 결산내역은 인건비가 3조 7,143억 9천 8백만원, 물건비 5,168억 1백만원, 이전지출 1조 1,301억 7천 7백만원, 자산취득 6,598억 9천 9백만원, 상환지출 819억 1천 6백만원, 전출금등 4조 4,500억 8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400억 9천 7백만원, 그리고 내부거래 142억 5천 2백만원임.

[표-15] 세출 성질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결산액			구성비	
		2020	2019	증감	2020	2019
인 건 비	3,749,008	3,714,398	3,781,862	△67,464	35.0	34.5
물 건 비	564,378	516,801	422,743	94,058	4.9	3.9
이전지출	1,162,552	1,130,177	1,117,636	12,541	10.7	10.2
자산취득	1,059,707	659,899	761,992	△102,093	6.2	6.9
상환지출	82,369	81,916	953,189	△871,273	0.8	8.7
전출금 등	4,573,699	4,450,080	3,887,162	562,918	42.0	35.4
예비비 및 기타	45,937	40,097	43,427	△3,330	0.4	0.4
내부거래	18,230	14,252	-	14,252	0.1	0.0
합 계	11,255,880	10,607,620	10,968,011	△360,391	100.0	100.0

### 1) 불용액(집행잔액)

- 2020회계연도에 발생한 불용액은 예산현액 11조 2,558억 8천 만원의 2.7%인 3,011억 5백만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2,813억 8천 9백만원(2.4%)보다 197억 1천 6백만원(7.0%) 증가하였음.
- 2020년도 불용액 발생의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이 302억 5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518억 2천만

원)보다 215억 6천 9백만원 감소하였고, ‘지급사유 미발생’은 62억 7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101억 9천 만원)보다 39억 1천 2백만원 감소하였음. 한편 ‘예산집행잔액’은 2,645억 7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2,188억 7천 3백만원)보다 457억 2백만원 증가하였음.

[표-16] 최근 3년간 불용률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2020	2019	2018
예산현액	11,255,880	11,736,841	10,488,409
집행잔액	301,105	281,389	345,701
집행잔액율	2.7	2.4	3.3

[표-17] 세출 성질별 불용률 내역

(단위 : 백만원, %)

성 질 별	예산현액	집행잔액 (잔액률)	전년도 (잔액률)	증감	집행잔액 발생사유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 집행잔액
합 계	11,255,880	301,105 (2.7)	281,388 (2.4)	19,717	30,252 (10.0 )	0 (0.0)	6,278 (2.1)	264,575 (87.9)
인건비	3,749,008	34,610 (0.9)	24,433 (0.6)	10,177	308	0	14	34,288
물건비	564,378	41,515 (7.4)	23,772 (5.2)	17,743	2,471	0	2,341	36,703
이전지출	1,162,552	32,127 (2.8)	32,117 (2.8)	10	94	0	953	31,080
자산취득	1,059,707	81,838 (7.7)	113,331 (8.6)	△31,493	18,742	0	0	63,096
상환지출	82,369	453 (0.5)	1,155 (0.1)	△702	0	0	0	453
전출금등	4,573,699	100,744 (2.2)	63,965 (1.6)	36,779	4,659	0	3	96,082
예비비및기타	45,937	5,840 (12.7)	22,615 (34.2)	△16,775	0	0	2,967	2,873
내부거래	18,230	3,978 (21.8)	0	3,978	3,978	0	0	0

- 이 중 ‘계획변경 및 취소’ 로 인한 불용액은 전년대비 41.6%가 감소하였는바, 이는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및 학교시설증개축 등과 같은 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 등의 ‘자산취득비’ 가 전년대비 258억 9천 1백만원 감소(58.0%)한 것에 따른 것임.
- 또한 ‘내부거래’ 로 인한 불용액은 전년과 달리 새롭게 발생하였는바, 이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및 ‘신청사 및 연수원건립기금’ 과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 등을 위한 기금전출금 중 도곡중 토지매각비가 세입조치되지 않음에 따라 세출에서 불용이 발생한 것임.
- 그리고 ‘지급사유미발생’ 으로 인한 불용액은 전년대비 38.4% 감소하였는바, 이는 코로나 19에 따른 재해·재난 지원 목적의 예비비가 증가함에 따른 것임.
- 한편 ‘예산집행잔액’ 으로 인한 불용액은 전체 불용액의 87.9%로 여전히 불용사유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유래없이 4차례에 걸쳐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전년도(77.8%, 2,188억 7천 3백만원) 보다 10.1% (457억 2천만원) 증가하였는바,
- 이와 같은 집행잔액에 의한 과다한 불용 발생은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사업부서의 안일한 예산운용이 문제라 할 것임.
-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장기화되는 코로나 19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각종 사업의 축소 및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음.
- 그러나 지방공무원 임용관리를 포함한 40개 사업들은 사업비 조정이 아닌 추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추경액을

초과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증액 사업의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예측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불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 대한 엄격한 지도 감독이 필요함.

[표-18] 추경 증액사업에 대한 불용 과다 발생

(단위 : 백만원, %)

부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이월액	집행잔액	추경예산
대변인	본청운영	50	36	72.2	0	14	1
총무과	지방공무원임용관리	1,040	900	86.5	0	140	63
예산담당관	계약제교원인건비	235,182	230,070	97.8	0	5,112	1,959
예산담당관	계약제근로자인건비	10,131	9,712	95.9	0	419	11
예산담당관	교육전문직원인건비	57,822	56,801	98.2	0	1,021	696
예산담당관	본청운영	74	69	92.2	0	6	2
예산담당관	지방공무원인건비	493,433	471,145	95.5	0	22,287	222
행정관리담당관	본청운영	57	43	75.3	0	14	2
참여협력담당관	교육급여지원	28,407	27,155	95.6	0	1,253	273
노사협력담당관	계약제근로자인건비	71,094	69,551	97.8	0	1,543	678
초등교육과	교원인사관리	885	830	93.8	4	51	1
중등교육과	교원임용관리	5,780	4,583	79.3	0	1,197	399
중등교육과	본청운영	95	82	86.6	0	13	1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대안교육운영지원	9,157	7,777	84.9	0	1,380	121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교폭력예방지원	12,041	9,961	82.7	12	2,069	116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생상담활동지원	19,258	17,106	88.8	418	1,734	176
학교지원과	본청운영	118	106	89.3	0	13	1
학교지원과	운영비재정결함지원	74,788	72,638	97.1	0	2,150	2,041
학교지원과	학교신증설	685	78	11.4	0	607	21
교육재정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	31,252	26,082	83.5	18	5,152	3,489
교육시설안전과	민간투자사업상환	104,116	102,804	98.7	0	1,312	197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5,172	33,183	73.5	7,445	4,544	1,922
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26,693	10,469	39.2	14,865	1,359	986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79,536	56,615	71.2	18,244	4,676	2,498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증개축	21,341	14,181	66.4	4,209	2,952	2,495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44,969	22,362	49.7	20,025	2,582	2,420
남부교육지원청	행정개선활동지원	164	152	92.2	0	13	3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시설관리	193	93	48.2	0	100	28
북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환경개선	23,972	11,249	46.9	10,129	2,594	1,183
중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2,823	35,342	82.5	5,530	1,951	588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운영	642	565	88.1	0	77	9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76,654	54,387	71.0	15,301	6,966	3,771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15,281	12,465	81.6	2,336	480	191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시설관리	2,541	397	15.6	159	1,985	186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운영	633	569	89.8	0	65	5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행정개선활동지원	158	136	85.9	0	22	9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7,218	3,367	46.6	666	3,185	201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급식환경개선	8,763	4,899	55.9	3,709	155	89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5,021	35,911	79.8	7,335	1,775	1,222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행정개선활동지원	147	143	96.9	0	5	3

## 2) 이월액

- 2020회계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체 예산현액 대비 3.08%에 해당하는 3,471억 5천 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4,874억 4천 1백만원) 1402억 8천 6백만원(28.8%)이 감소하였음.
-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예외로서 명시

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 등의 제도를 두고 있음<sup>4)</sup>.

[표-19] 이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 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	11,255,880	347,155	129	64,224	1,021	282,931	3.08
2019	11,736,841	487,441	308	185,535	1,074	301,906	4.15
증감	△480,961	△140,286	△179	△121,311	△53	△18,975	△1.07

### 가) 명시이월

○ 명시이월이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5)에 따라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임.

- 2020회계연도 명시이월액은 전체 예산현액 대비 0.6%에 해당하는 642억 2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명시이월액 대비 65.4%(1,213억 1천 1백만원) 감소한 것임.

4)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P.170)

구 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까지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이월액확정요구 (사업부서→ 예산부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액확정 (예산부서)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의결 연장, 사고

5) 「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20] 명시이월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A)	건수	명시이월액(B)		전년대비 증감액	
			금액	비율 (B/A)	금액	증감률
2020	11,255,880	129	64,224	0.6	△121,311	△65.4
2019	11,736,841	308	185,535	1.6	1,937	1.1
2018	10,488,409	308	183,598	1.8	48,283	35.7

○ 명시이월의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시설증개축이 43.3%, 학교 시설교육환경개선이 26.2%, 학교신증설이 14.1%, 학교급식환경개선이 6.8% 등 시설사업이 전체 명시이월액의 90.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4.8% 감소된 수준임.

[표-21] 명시이월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			
			이월액	구성률	이월률	전년도 이월률
합계	84,669	16,885	64,224	100.00	75.85	86.77
학교시설증개축	28,447	429	27,836	43.34	97.85	97.86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1,485	1,848	16,810	26.17	78.24	96.78
학교환경위생관리	16,828	13,384	3,165	4.93	18.81	
학교신증설	9,408	203	9,077	14.13	96.48	72.91
학교급식환경개선	4,338	-	4,338	6.75	100.00	88.45
교육과정운영	1,100	-	1,100	1.71	100.00	23.00
사립유치원지원	1,004	768	235	0.37	23.44	57.19
시설사업관리	900	-	879	1.37	97.66	100.00
ICT활용교육지원	508	253	224	0.35	44.12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150	-	150	0.23	100.00	
방과후학교운영	150	-	150	0.23	100.00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148	-	57	0.09	38.38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100	-	100	0.16	100.00	
직속기관시설관리	56	-	56	0.09	100.00	
학생상담활동지원	35	-	35	0.05	100.00	
학교보건관리	8	-	8	0.01	100.00	
교원인사관리	4	-	4	0.01	100.00	

○ 명시이월 발생 사유별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추진을 위한 기간부족이 72건, 503억 9백만원(78.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추진 중 장애발생으로 인한 사유가 48건, 92억 4백만원(14.3%), 사업비 부족이 2건, 9억 3천 5백만원(1.5%), 기타 사유가 7건, 37억 7천 6백만원(5.9%) 등임.

- 이 중 사업추진을 위한 기간부족과 사업추진 중 장애발생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각각 81건(745억 3천 8백만원), 40건(256억 7천 2백만원) 감소하였으나, 명시이월액 규모의 감소로 명시이월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5% 증가하였음.

- 다만 사업비 부족은 비록 2건에 불과하나 이월액이 9억 3천 5백만원에 이르는 바, 이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예산의 확보 등 예산 추계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사료됨.

[표-22] 사업비 부족으로 명시이월된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률	사유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동신중 운동장 개선	150	100.0	예산부족으로 2021년 사업추진
	환일중 봉학관 외벽개선	785	100.0	설계진행 중 사업예산 신청시 화장실, 물탱크실 외벽 등 물량(9.25실)누락

- 예산의 이월은 예산의 변경을 통한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무분별한 이월의 남용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이월제도를 이용할 경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임.

[표-23] 명시이월 발생 사유

(단위 : 백만원, %)

구 분		총 계	사업추진 기간부족	사업추진 장애발생	사업비부족	기타
2020	건 수	129	72	48	2	7
	이월액 (비율)	64,224 (100.0)	50,309 (78.3)	9,204 (14.3)	935 (1.5)	3,776 (5.9)
2019	건 수	308	153	88	-	67
	이월액 (비율)	185,534 (100.0)	124,847 (67.3)	34,876 (18.8)	-	8,742 (13.9)
2018	건 수	308	177	58	-	73
	이월액 (비율)	183,598 (100.0)	152,910 (83.3)	21,946 (12.0)	-	8,742 (4.7)

- 한편 2019회계연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이 2020회계연도에도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은 총 5개 사업, 40억 7천 1백만원으로,

이와 같이 명시이월 후 사업비 전액이 불용 처리되는 사례는 사업추진의 장애로 인해 발생한 측면이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당시부터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함.

[표-24] 명시이월 후 전액 불용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2019년 명시이월액	2020년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 사유
대안교육운영지원	606	-	100.0	-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미설립

학교체육활성화지원	449	-	100.0	- 코로나19에 따른 생존수영교육미 실시 - 강북학생체육관 타당성 조사 용역 미 실시
학교신증설	605	-	100.0	- 동진학교 설립 추진 지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550	-	100.0	- (구)공항공 이적지 사업진연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용역 미 실시
교육지원청시설관리	1,861		100.0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청사증축사업 전면 취소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신축이전 추진으로 증축 사업취소
합계	4,229	-	100.0	

## 나) 사고이월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6)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공사기간 연장 등 사업시기 조정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회계연도 내 예산지출을 끝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것임.

○ 2020회계연도 사고이월액은 전년대비 189억 7천 5백만원 감소(6.3%)한 2,829억 3천 1백만원으로 전체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은 2.5%임.

## [표-25] 사고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건)

회계연도	예산현액(A)	건수	사고이월액(B)		전년대비 증감액	
			금액	비율(B/A)	금액	증감률
2020	11,255,880	1,021	282,931	2.51	△18,975	△6.29
2019	11,736,841	1,074	301,906	2.57	△56,641	△15.80
2018	10,488,409	891	358,547	3.42	56,975	18.89

- 6) 「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사고이월의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과 마찬가지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신증설, 학교급식환경개선, 학교시설증개축, 교실증축 등 시설사업이 전체 사고이월액의 96.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직속기관시설관리, 정보보안관리 등 29개의 사업을 포함하여 총 1,021건이 사고이월 되었음.

[표-26] 사고이월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사고이월		
				이월액	구성률	이월률
<b>합계</b>	<b>434,601</b>	<b>400,410</b>	<b>117,478</b>	<b>282,931</b>	<b>100.00</b>	<b>65.1</b>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10,695	189,953	53,751	136,202	48.14	64.6
학교신증설	100,501	96,758	21,460	75,298	26.61	<b>74.9</b>
학교급식환경개선	46,041	44,638	11,592	33,046	11.68	<b>71.8</b>
학교시설증개축	52,814	46,626	20,938	25,689	9.08	48.6
직속기관시설관리	8,091	7,866	1,546	6,320	2.23	<b>78.1</b>
교실증축	5,364	5,151	3,032	2,119	0.75	39.5
정보보안관리	1,078	858	40	818	0.29	<b>75.9</b>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893	885	264	622	0.22	69.7
사이버가정학습운영및지원	1,478	1,341	938	402	0.14	27.2
학생상담활동지원	400	400	17	383	0.14	<b>95.8</b>
교육정책기획관리	1,105	1,058	713	345	0.12	31.2
시설사업관리	909	410	118	292	0.10	32.1
교육지원청시설관리	552	523	248	275	0.10	49.8
학생생활지도지원	808	693	497	196	0.07	24.3
교육연구운영지원	892	823	677	146	0.05	16.4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	144	126	2	124	0.04	<b>86.1</b>
공유재산및물품관리	700	624	514	110	0.04	15.7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123	122	33	89	0.03	<b>72.4</b>
문화예술교육활성화	404	343	257	86	0.03	21.3
교원인사관리	85	78	-	78	0.03	<b>91.8</b>

교원연수운영	110	104	54	49	0.02	44.5
학교급식관리	191	164	115	49	0.02	25.7
학교체육활성화지원	492	332	289	44	0.02	8.9
교육행정기록물관리	150	113	79	34	0.01	22.7
지방공무원연수운영	25	20	-	20	0.01	<b>80.0</b>
사립유치원지원	92	88	70	18	0.01	19.6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50	50	35	15	0.01	30.0
직속기관운영	88	88	73	15	0.01	17.0
특색교육과정운영	60	60	48	12	0.00	20.0
학교폭력예방지원	80	46	35	12	0.00	15.0
영재교육운영	17	14	5	9	0.00	52.9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37	33	25	8	0.00	21.6
다문화및북한이탈북한이탈주민 등자녀교육지원	130	20	12	8	0.00	6.2
교육지원청운영	3	3	2	1	0.00	33.3

- 사고이월 발생 사유별 내역을 살펴보면 학사일정에 따른 방학중 공사추진이 670건, 1,465억 5백만원(51.8%), 계약기간 미도래가 216건, 1,029억 3천 2백만원(36.4%), 추경 등 예산배정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기간 부족이 89건, 244억 5천만원(8.7%), 사업추진 중 장애발생이 19건, 49억 7백만원(1.7%), 사전절차 지연이 7건, 6억 3백만원(0.2%) 등임.
- 이와 같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고이월의 발생사유는 사업기획 단계에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 검토 및 구체적 사업예산의 추계 등을 통해 충분히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던 사항으로 이는 사고이월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임.
- 장기적인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청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관행적으로 사고이월이 1000건을 넘기는 것

은 충분한 사전검토와 예측없는 관례적인 예산편성을 방증하는 것인 바, 편성과정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해당연도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감액하거나 차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이와 같은 시설사업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방학기간 중 수행되는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완료에 장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사고이월이 아닌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더욱이 「202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는 시설사업비의 경우 그 집행에 2회계연도 이상 걸리는 사업이라면 계속비로 편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시설사업의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는 등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27] 사고이월 발생 사유

(단위 : 백만원, %, 건)

구 분		총 계	계약기간 미도래	추경편성 사업	사전절차 지연	사업추진중 장애발생	방학중 공사추진	기타
2020	건 수	1,021	216	89	7	19	670	20
	이월액 (비 율)	282,931 (100.0)	102,932 (36.4)	24,450 (8.7)	603 (0.2)	4,907 (1.7)	146,505 (51.8)	3,534 (1.2)
2019	건 수	1,074	272	174	38	46	496	48
	이월액 (비 율)	301,906 (100.0)	98,595 (32.66)	46,714 (15.47)	7,414 (2.46)	27,261 (9.03)	115,145 (38.14)	6,777 (2.24)
증감	건 수	△53	△56	△85	△31	△27	174	△28
	이월액 (비 율)	△18,975 (0.0)	4,337 (△3.7)	△22,264 (6.8)	△6,811 (2.3)	△22,354 (7.3)	31,360 (△13.7)	△3,243 (1.0)

### 3) 전용·이체

#### 가) 전용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7)에 따라 예산을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세항·목 간의 상호변경을 통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신축성을 부여한 것으로 2020회계연도에는 대변인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온라인 기자회견 운영 장비 구입 등 총 91건, 625억 3천 7백만원의 예산 전용이 있었는바,

이는 예산현액 11조 2,558억 8천 8백만원 대비 0.56%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년도 235억 2백만원(예산현액 대비 0.2%) 보다 390억 3천 5백만원(166.1%) 증가한 것임.

[표-28] 예산의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건)

회계연도	발생건수	예산현액 ①	전 용 액②	전용비율 (②/①)
2020	91	11,255,880	62,537	0.56
2019	88	11,736,841	23,502	0.20
2018	71	10,488,409	10,227	0.10
전년도증감	3	△480,961	39,035	0.36

7)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표-29] 성질별 '전용' 규모

(단위 : 백만원, %)

성질별 예산구분	2020회계연도		2019회계연도		증감 (A-B)
	전용액(A)	구성비	전용액(B)	구성비	
합 계	61,819	100.0	23,502	100.0	38,317
인건비	21,330	34.50	9,359	39.82	11,971
기관운영비	64	0.10	2	0.01	62
학교운영비	1	0.00	0	0.00	1
교육사업비	40,255	65.12	14,011	59.62	26,244
시설사업비	169	0.27	130	0.55	39

-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인 만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예산의 전용은 전년도에 비해 발생건수 및 전용액이 증가한 것으로 최근 3년간 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 더욱이 2020회계연도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4차례의 추경이 있었으며, 이 중 4차 추경은 2020년 8월 12일 제출되었는바,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의 운용에 있어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을 미리 파악하여 이를 수차례의 추경을 통해 반영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4분기에만 예산의 전용이 28건 있었음.
-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의 각 사업부서에는 예산 전용의 내재적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예산을 전용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전용은 제한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일부 전용의 경우 예산 편성시 사업에 대한 추계 및 예산편성의 오류를 해소하거나 예산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도말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전용하는 사례<sup>8)</sup>가 있는바, 예산전용이 예산편성의 오류를 바로잡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됨.

[표-30] 분기별 '전용' 규모

(단위 : 건, 백만원)

회계연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	27	29,372	22	18,871	14	2,446	28	11,848
2019	16	1,411	17	10,333	11	395	34	11,363
2018	11	1,394	26	4,200	12	423	22	4,210

## 나) 이체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sup>9)</sup>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중 예산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의 개편으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기타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임.

8)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서', 346쪽.

소관	세부사업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승인일	사유
				증	감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554,727	16,700	16,700	'20.11.06	서부교육지원청 중정 테크파손으로 인한 수리, 지하출입구 천정도장 필요로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운영비로 전용
	교육지원청운영		554,727	16,700	16,700		
		운영비	364,523	16,700	0		
		여비	111,924	0	7,000		
		직무수행경비	62,280	0	1,880		
		보전금	16,000	0	7,820		

9)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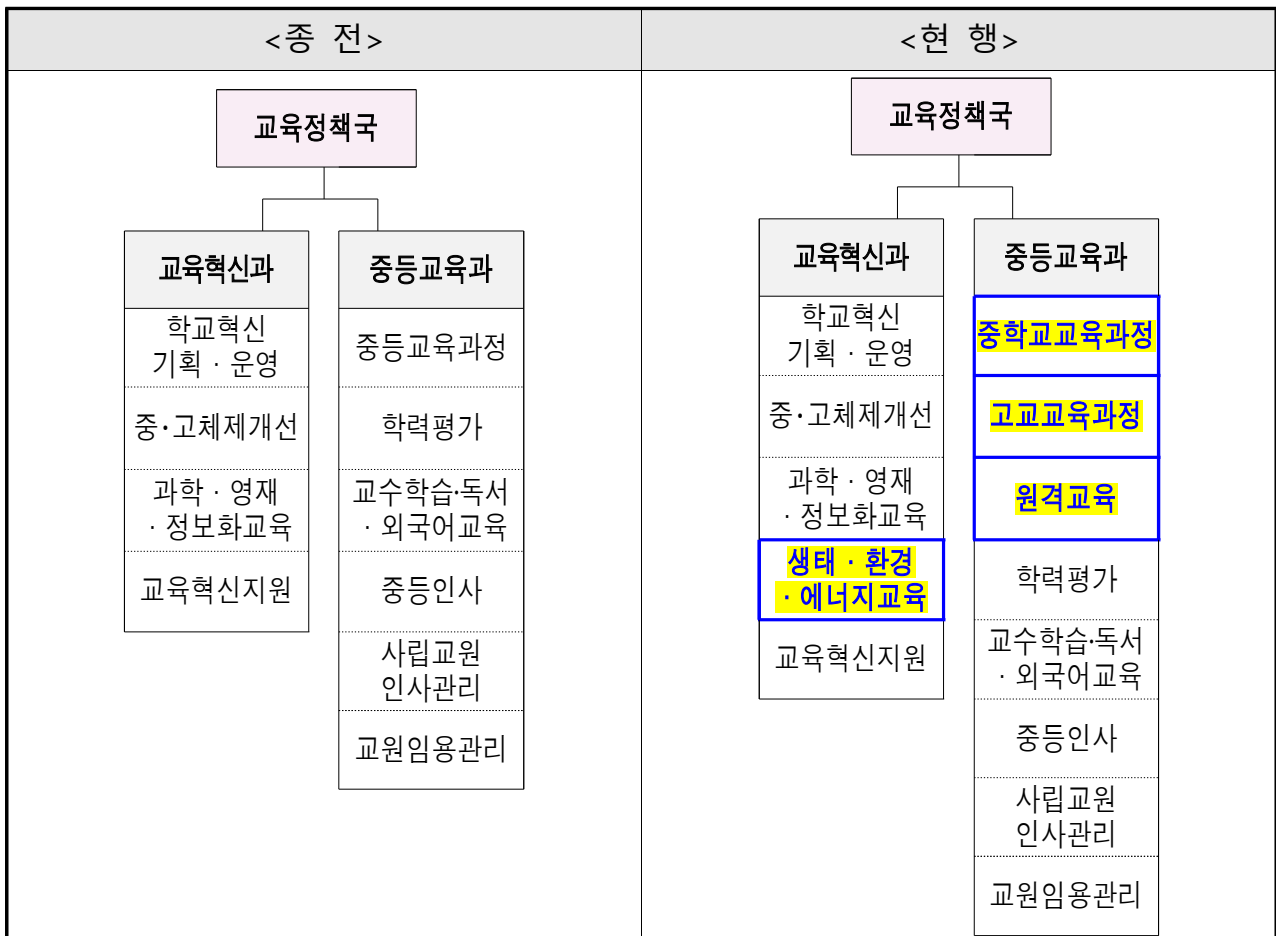
- 서울시교육청은 2020.9.1.자 조직개편(행정관리담당관-7801)에 따라 교육혁신과의 스마트교육지원 업무를 중등교육과로 업무를 이관함에 따라 125억 4천 1백만원의 이체가 발생됨.

[표-31] 예산의 '이체'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연도	발생건수	예산현액	이체액	
			증	감
2020	3	11,255,880	12,541	△12,541
2019	44	11,736,841	170,711	△170,711
2017	17	9,921,584	23,670	△23,670

[표-32] 서울시교육청 조직 개편 현황



- 다만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따른 조직개편이 그 근거가 되어야 하나, 금번 결산상 예산의 이체는 이러한 법령의 제·개정없이 이루어졌는바<sup>10)</sup>,

서울시교육청은 조직개편을 위한 근거법령의 개정없이 이루어진 예산의 변동이 예산의 이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예산의 이체는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예산의 이체로 인한 사업 이관 부서에서는 당초 대상 사업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바,

이관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예산의 이체로 인한 업무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4) 채권.채무

##### 가) 채권

- 2020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347억 8백만원으로 전년도 2,807억 6천 6백만원 대비 460억 5천 8백만원(16.4%)이 감소하였음.
- 채권의 종류별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매각대 분할납부이자, 전세자금, 수업료, 기타수입, 대여장학금 등은 전년도말 현재액에 비해 약 476억 6천 3백만원(17%)이 소멸되었으나, 토지매각대, 기타유형자산 매각대, 대지료, 위약금 등은 전년도말 현재액에 비해 9억 6천 8백만원(0.6%)이 증가하였음.

10) 서울시교육청은 '혁신교육 2.0시대를 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규모 조직개편 계획 알림'(행정관리담당관 -7801.(2020.6.22.))에 근거하여 2020년 하반기에 소규모 조직개편을 하였음.

○ 이와 같은 채권보유액의 감소는 공무원 연금공단의 대여장학금 소요 자금에 대한 부담이 감소(325억 9천 6백만원)한 것이 주요 원인임. 그러나 여전히 토지매각대, 대지료(토지임대수입), 위약금 등은 발생 금에 비해 소멸액이 적어 채권이 증가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채권이 불납 또는 시효완성에 따른 자산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채권 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표-33] 채권 종류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종 류 별	전년도말 현재액 (A)			당해연도 중 발생액 (B)			당해연도 중 소멸액 (C)			당해연도말 현재액 D = A + (B-C)		
	계	이행 기간 도래액	이행 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 기간 도래액	이행 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 기간 도래액	이행 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 기간 도래액	이행 기간 미도래액
합 계	280,766	12,967	267,799	2,390	2,390	0	48,448	1,117	47,331	234,708	14,239	220,468
토지매각대	854	15	839	1,789	1,789	-	224	15	209	2,419	1,789	630
토지매각대 분할납부이자	46	1	45	1	0	0	16	1	15	30	0	30
기타유형자산 매각대금	-	-	-	8	8	-	-	-	-	8	8	-
전세자금	5,860	-	5,860	-	-	-	10	-	10	5,850	-	5,850
대 지 료	211	211	-	69	69	-	48	48	-	232	232	-
대 가 료	-	-	-	-	-	-	-	-	-	-	-	-
입 학 금	-	-	-	0	0	-	-	-	-	0	0	-
수 업 료	335	335	-	3	3	-	261	261	-	78	78	-
기타사용료	0	0	-	-	-	-	0	0	-	-	-	-
변 상 금	6,758	6,758	-	293	293	-	293	293	-	6,758	6,758	-
위 약 금	2,344	2,344	-	71	71	-	60	60	-	2,355	2,355	-
기타수입	17,804	3,303	14,501	156	156	-	14,940	440	14,501	3,020	3,020	-
대여장학금	246,554	-	246,554	-	-	-	32,596	-	32,596	213,958	-	213,958

## 나) 채무

- 2020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3,161억 7천 7백만원으로 2019년도말 현재액과 동일한 수준임.
- 이는 2019회계연도에 2014년도 발행한 학교신설분 595억 1천 4백만원 등 총 8,529억 6천 7백만원의 지방채를 조기 상환함에 따라 2015년과 2016년에 발생한 지방채에 대해서만 채무가 남아있기 때문으로, 이는 상환조건이 5년거치 후 10년 분할상환으로 2021회계연도와 2022회계연도부터 상환할 예정임.

[표-34] 채무 현황

(단위 : 백만원)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채무발생액	상환, 소멸액	비교증감(계)	
지방교육채(차입금)	316,177	0	0	0	316,177

[표-35] 지방채 발행 및 상환내역

(단위 : 백만원, %)

발행 대상 회계 연도	상황 재원 부담 주체	상환 조건	이율 (%) (고정 /변동)	사업명	승인액	발행액		상환액			'20년말 잔액 (c=a-b)	'20년 이자 납부액	'20년 조기 상환 액	
						기 발행액	계 (a)	기 상환액	'19 상환액	계 (b)				
합 계						486,177	486,177	486,177	0	170,000	170,000	316,177	5,690	0
'15년	교육 부	5년거치 10년균등 분할상환	2.267 (고정)	유치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	268,763	268,763	268,763	0	170,000	170,000	98,763	2,245	0	
'16년	교육 부	5년거치 10년균등 분할상환	1.58 (고정)	교육환경개선	217,414	217,414	217,414	0	0	0	217,414	3,445	0	

[표-36] 향후5년간 지방채 상환계획

(단위 : 백만원)

발행대상 회계연도	상환재원담주체	사업명	최초상환연도	최종상환연도	'20년말잔액 (A)	상 환 계 획					상환후잔액 (C=A-B)	
						2021	2022	2023	2024	2025		계(B)
합 계					316	9,876	31,618	31,618	31,618	31,618	136,347	179,830
'15년	교육부	유치원 신설 및 교육환경개선	2021	2030	98,763	9,876	9,876	9,876	9,876	9,876	49,382	49,382
'16년	교육부	교육환경개선	2022	2031	217,414	-	-	21,741	21,741	21,741	65,224	152,190
소 계(국가부담)					316,177	9,876	31,618	31,618	31,618	31,618	136,347	136,347

### 5) 공유재산 및 물품

- 202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1조 3,284억 3백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3,650억 7천 3백만원(1.2%)이 증가하였음.
- 이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행정재산은 30조 9,912억 9천 5백만원(현재액 대비 구성률 98.9%)으로 이 중 공용재산이 전년도말 대비 2,423억 5천 4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그 외 행정재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임. 또한 일반재산은 3,371억 8백만원(현재액 대비 구성률 1.1%)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1,227억 1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은 공유재산의 증가는 행정재산의 경우 학교신·증설 등에 따른 토지, 건물 등의 공용재산 증가에 따른 것이며, 일반재산의 경우 토지, 건물 및 공작물, 임목중 등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후 인수와 매각 및 누락재산의 등재 등에 따른 재산 변동에 의한 것임.

[표-37] 공유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용도별	2019년도말 현재액	2020년도 중 증감액			2020년도말 현재액
		계	증가	감소	
합 계	30,963,330	365,073	800,529	435,456	31,328,403
행정재산	30,748,941	242,354	581,650	339,297	30,991,295
공용재산	30,747,971	242,354	581,650	339,297	30,990,325
공공용재산	0	0	0	0	0
기업용재산	0	0	0	0	0
보존재산	970	0	0	0	970
일반재산	214,389	122,719	218,879	96,159	337,108

[표-38]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단위 : 천원)

종류별	단위	2019년도말 현재액		2020년도 중 증감액						2020년도말 현재액	
		수량	금액	계		증가		감소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26,433,091	30,963,330	151,436	365,073	408,773	800,529	257,337	435,456	26,584,527	31,328,403
토지	m <sup>2</sup>	14,008,516	22,148,706	6,637	26,512	142,960	376,062	136,323	349,550	14,015,154	22,175,218
건물	m <sup>2</sup>	10,906,229	8,505,271	106,955	313,616	204,149	393,079	97,195	79,463	11,013,184	8,818,887
공작물	식	239,116	252,365	39,814	24,106	40,875	29,180	1,061	5,074	278,930	276,471
입목죽	본	1,272,759	50,175	△1,723	△203	20,486	1,044	22,209	1,247	1,271,036	49,972
기계기구	점	234	3,086	7	898	7	898	0	0	241	3,984
선박항공기	척	0	0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건	6,219	1,414	△254	△56	296	66	550	122	5,965	1,358
유가증권	주	0	0	0	0	0	0	0	0	0	0
지상권등 용익물권	건	8	2,310	0	200	0	200	0	0	8	2,510
특허권 등 기타권리	건	10	3	0	0	0	0	0	0	10	3

○ 한편 2020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902억 9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과 대비하여 수량은 564개, 금액은 10억 5천 8백만원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이 수량과 금액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원격수업 등을 위한 빔프로젝터, 카메라 등의 물품을 구매함에 따른 것인바, 이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재산관리 및 변동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표-39] 물품의 증감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물품 증감 현황											당해연도말 보유액
		취득					처분						
		구매	관리 전환	양여	기타	소계	매각	관리 전환	양여	폐기	기타	소계	
수량	34,204	2,912	4	7	138	3,061	78	7	370	1,968	74	2,497	34,768
금액	89,233	7,404	7	7	392	7,810	849	15	804	4,880	203	6,751	90,292

(단위 : 개, 백만원)

품명	단위	내용연수	구분	전년도 말 현재액	당해연도 물품 증감 현황										당해연도 말 보유액	증감	
					취득					처분							
					구매	관리 전환	양여	기타	소계	매각	관리 전환	양여	폐기	기타			소계
비디오 프로젝터	대	8	수량	21,123	1,739	2	5	94	1,840	33	6	297	1,207	37	1,580	21,383	260
			금액	43,990	4,276	2	6	289	4,572	76	12	674	2,633	82	3,477	45,083	1,096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대	9	수량	5,906	804	0	2	24	830	3	0	19	321	12	355	6,381	475
			금액	7,695	1,082	0	1	33	1,116	9	0	17	395	15	436	8,375	680

## 라. 성인지결산

- 서울시교육청은 「지방회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sup>11)</sup> 성인지 예산제도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임.
- 2020회계연도 ‘성인지’ 사업의 성과목표는 34개 사업이며, 이 중 목표달성을 이룬 사업은 25개 사업, 73.5%로 전년도 달성사업(18개 사업, 60%)보다 7개 사업, 13.5% 증가하였습니다.
- 또한 ‘성인지’ 결산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3(전년도 11개), 교육부지정사업 19개(전년도 12개), 자체선정사업 2개(전년도 2개) 등 총 34개 사업에 2,009억 8천 9백만원으로 전체 예산현액 11조 2,558억 8천만원 대비 1.8%(전년도 1.5%)이며, 성인지 사업 집행률은 성인지 사업 예산현액 2,186억 3백만원 대비 91.9%로 전년도(93.5%)보다 1.6% 감소하였음.

**[표-40] 성인지 결산 총괄표**

(단위 : 개)

구 분	성과목표(A)	목표달성도		목표달성률 (B)/(A)
		목표달성(B)	목표미달성	
<b>2020</b>	<b>34</b>	<b>25</b>	<b>9</b>	<b>73.5%</b>
2019	30	18	12	60.0%
<b>증감</b>	<b>4</b>	<b>7</b>	<b>△3</b>	<b>13.5%</b>

11) 「지방회계법」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사업분류별 검토

- 먼저 성인지 사업을 사업분류별로 살펴보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3개 사업)의 예산현액은 1,137억 8천 2백만원 (93.5%)으로 전년도(67.6%)와 비교하여 사업은 2개 추가되고 예산현액은 161억 1천 6백만원 증가하였음.
- 교육부지정사업은 1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041억 1천 8백만원 대비 지출액은 939억 4천 8백만원 (90.2%)으로 전년도(97.2%)와 비교하여 사업은 7개 추가되고 예산현액은 417억 4천 5백만원 증가하였음.
- 자체선정사업은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7억 3백만원 대비 지출액은 6억 9천만원 (98.1%)으로 전년도(97.3%)와 비교하여 사업수는 동일하고 예산현액은 4천 4백만원 증가하였음.

[표-41] 사업분류별 성인지 사업 결산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분류		사업개수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성과목표 달성 사업개수
합 계		34	218,603	200,989	91.9	25
필수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13	113,782	106,351	93.5	11
	교육부지정사업	19	104,118	93,948	90.2	13
선택	자체선정사업	2	703	690	98.1	1

## 2) 성과목표달성도가 저조한 사업

- 총 34개 사업 중 25개 사업은 당초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나(전체 달성율 73.5%), 오디세이학교운영 등 9개 사업은 성과목표 달성율

이 100%에 미치지 못하였고, 특히 오디세이학교운영 등 5개 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성과목표 달성도를 충족하지 못하였음.

○ 더욱이 오디세이학교운영, 영어체험 교육지원, 초등 스포츠강사 지원 사업, 학교안전망 구축 등 4개 사업은 2018년부터 계속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은 성인지예산의 목표 달성률을 책정함에 있어 사업이 지향하는 목적과 실현가능성, 적합성,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달성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표-42] 성인지 성과목표달성도 100%미만 사업목록

(단위 : %)

사업명	성과목표	2020			2019		
		목표 (A)	실적 (B)	달성도 (B/A)	목표 (A)	실적 (B)	달성도 (B/A)
오디세이학교운영	학교 재학생의 균등한 성비율 유지	50.0	42.7	85.4	50.0	49.3	98.6
영어체험교육지원	단기집중 영어교육프로그램 여학생 참여율 제고	48.9	48.8	99.8	50.0	48.7	97.4
초등스포츠강사 지원사업	여성스포츠강사 확대	32.2	28.6	88.9	32.2	29.8	92.5
학교안전망구축	배움터지킴이 여성비율 확대	4.5	4.4	97.8	4.8	4.3	89.6
청소년단체활동지원	여학생 참여비율 확대	60.0	59.0	98.4	57.5	50.1	87.1
성인권증진 및 성평등정책	성평등 직무연수 남성교원 이수 비율 확대	20.0	2.2	11.0			
교원노사관리	노사관계교육 대상자 성비 균형 유지	61.6	60.7	98.6	52.1	60.0	115.2
중등수석교사제운영	여성 수석교사 확대	53.9	53.8	99.9	53.0	53.1	100.2
인사관리(교권보호)	교육활동 침해 피해 여성 교원에 대한 지원 강화	78.8	75.0	95.2	77.8	86.5	111.2

### 3) 기타 사업별 예산집행 저조 사업

- 세출예산현액 대비 사업별 예산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사업의 집행률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한 성과목표를 100% 이상 초과 달성한 사업도 4건이 있음.

[표-43] 집행률 80% 이하 달성도 100% 이상 사업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달성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54	40	75.5	108.0
교장 및 기관장 임용	85	66	77.2	초등 111.1 중등 103.0
초등수석교사제운영	74	51	69.0	106.6
화장실개선(전면)	32,423	25,077	77.3	103.0

- 이와 같이 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는 것은 당초 성과계획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거나 예산을 과다 편성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판단되는바,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성인지 예산 편성을 위한 성과계획 수립시 현실 가능한 적정한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예산편성에 있어 성과계획에 맞는 합리적이고 정확한 예산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마. 성과보고서**

-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sup>12)</sup>에 따라 결산 승인안과 함께 제출되는 결산서의 구성서류로서, 예산의 성과계획에 따른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임.
- 2020회계연도 성과관리 대상사업 결산액은 전체 세출결산액(10조 6,076억 2천만원) 대비 33.9%인 3조 5,990억 7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성과관리 대상사업 결산액(3조 2,923억 3백만원)보다 3,067억 6천 9백만원(9.3%) 증가하였음.

**[표-44] 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		2019		증감액
		결산액	집행률	결산액	집행률	
<b>합 계(A+B)</b>		10,607,620	94.2	10,968,011	93.4	△360,391
성과관리 대상사업	전략목표 I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	418,272	97.4	344,889	97.8	73,383
	전략목표 II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책임교육)	1,394,142	88.8	1,232,940	87.7	175,397
	전략목표 III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	110,072	89.8	70,754	91.0	18,092
	전략목표 IV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1,518,428	81.4	1,473,215	75.4	52,244
	전략목표 V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	158,158	91.5	170,505	93.0	△12,348
	소계(A)	3,599,072	86.5	3,292,303	82.9	306,768
성과관리 비대상사업	인력운영비	5,931,552	99.0	5,789,835	98.9	141,717
	기본운영경비	968,435	97.8	906,689	98.8	61,746
	지방채상환	5,690	100.0	875,731	100.0	△870,041
	BTL사업비	102,804	98.7	103,453	98.4	△649
	예비비 등	67	2.2	0	0.0	67
	소계(B)	7,008,548	98.8	7,675,708	98.9	△667,160

12)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2020회계연도 성과관리 대상사업은 전략목표수 5개, 성과목표수 15개,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수 8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지표 대비 초과달성은 9개(10.5%), 달성은 62개(72.1%)로 전체 82.6% (71개)의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음.

- 이와 같은 달성률은 전년도 달성률과 비교하여 초과달성은 6개 감소했으며, 달성은 1개 증가하는데 그친 것임. 더욱이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수가 전년도 대비 1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율은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45] 성과관리 총괄

(단위 : 개, %)

회계연도	전략 목표수	성과목표수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등급		
				초과달성 (130% 이상)	달성 (100%~130%)	미달성 (100% 미만)
2020	5	15	86	9	62	15
			100	10.5	72.1	17.4
2019	5	20	87	15	61	11
			100.0	17.2	70.1	12.7

○ 미달성된 성과지표는 15개로 전년도에 비해 4개 감소하였으며, 세부 지표로는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 (96.5%), ‘협력종합예술활동 운영성과발표(영상제작) 참여비율’ (95.1%), ‘초등 5·6학년까지 수영교육 만족도’ (미실시), ‘사학기관 운영평가 노력지표 평가결과 향상도’ (90.9%),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97.4%), ‘교육행정지원 시스템 이용률’ (56%), ‘방과후과정 유아 참여율’ (92.6%),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강화 연수프로그램 만족도’ (97.8%), ‘교

육법률지원단 상담횟수’ (97.5%), ‘민방위대피훈련 참여 실적’ (미 실시), ‘디자인 중심의 설계공모 운영률’ (90.5%),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자 직무연수 이수율’ (71.9%), ‘학부모교육 참여 증가율’ (85.9%), ‘예산안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자문의견 반영률’ (92.9%), ‘교원노사관계 직무연수 이수율’ (95.5%) 등임.

- 이 중 ‘초등5·6학년까지 수영교육 만족도’는 수영교육을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이론교육으로 대체함에 따라 실시하지 않았으며, ‘민방위대피훈련 참여 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해 훈련이 취소됨에 따라 실시하지 않음.
- 이처럼 미실시된 성과지표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달성률을 나타내는 성과지표는 새롭게 성과 지표로 포함된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자 직무연수 이수율’로 목표대비 실적 달성률은 71.9%에 불과함.
  - 이처럼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달성률이 낮은 것은 이미 임용 전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참여도가 낮았고, 기존 직장에서의 업무 인수인계 등의 사유로 조퇴 등이 빈번함에 따른 것인바,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신규채용자의 직무연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일부 성과지표의 경우 전년도에 이어 2020회계연도에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바, 연속적인 성과지표의 미달성은 성과지표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방증하는 것인 바,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성과지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46] 미달성 성과지표 내역

(단위 : %)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미달성 사유		
			구분	'20년	'19년			
<b>전략목표 I: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b>								
I-2(인문과학예체능교육 활성화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1. 협력종합예술활동 운영성과발표(영상제작) 참여비율(%)	(발표(영상제작) 참여 학교 수/운영교 수) ×100	목표	80	92	코로나 19로 인한 1학기 발표회 전면 취소 및 2학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당초 설정된 목표치 미달성		
			실적	76.18	100			
			달성률(%)	95.23	108.70			
	4. 초등 5,6학년까지 수영교육 만족도	척도별5점 척도 중 '보통'이상 총응답수 /전체응답수×100	목표	80	92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이론교육 대체 허용	
			실적	미실시	92.41			
			달성률(%)	-	100.45			
<b>전략목표 II: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b>								
II-1.(교육의 공공성 확립)	2. 사학기관 운영평가 노력지표 평가결과 향상도(점)	법인운영 및 학교행정 영역 평균점수*100 /75 ※노력지표(75): 법인운영(40), 학교행정(35)	목표	82	78.50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평가기관(학교법안)의 사학기관 운영평가 관심도 저하와 사학기관 정상 운영 제약		
			실적	74.50	80.53			
			달성률(%)	90.85	102.59			
	3.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점)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정점 (매년12월첫주언론발표)	목표	7.25			조직 내외를 막론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갑질 문제' 등에 대한 인식확산으로 업무 지시공정성 분야의 점수하락	
			실적	7.06	신규			
			달성률(%)	97.38				
	4. 교육행정지원 시스템 이용률(%)	[[금년도 월평균 시스템 접속자 수 - 직전2년간 월평균 시스템 접속자 수] / 직전2년간 월평균 시스템 접속자 수 × 100] × 50% + [[금년도 시스템 가입자 수 / 기존 시스템 가입자 수 × 100] × 50%	목표	10	7.20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질의접속자수 감소		
			실적	5.60	6.19			
			달성률(%)	56	85.97			
	II-3(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2. 방과후과정 유아 참여율(%)	(방과후 과정 원아수/전체 원아수)×100	목표	72		57	코로나19로 개학연기 및 등원제한(방과후 과정 유아 총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 지침에 따라 방과후 과정 참여율이 전년도 대비 감소함
				실적	66.69		68.92	
				달성률(%)	92.63		120.91	
<b>전략목표 III: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b>								
III-2(생명과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	2. 특수교육보조 인력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만족도(%)	(연수운영 '만족' 이상 응답자 수/연수 참가자 수)×100	목표	90		코로나19로 인하여 특수교육 보조인력 연수를 기존 집합 연수에서 원격연수로 대체함에 따른 연수 프로그램 만족도 하락		
			실적	88	신규			
			달성률(%)	97.78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미달성 사유
			구분	'20년	'19년	
	4. 교육법률지원단 상담횟수(건)	본청 교육지원청 소속 변호사 상담건수	목표	4,615	7,000	학교에서의 사안처리 절차 속지로 상담 건수 감소 및 코로나로 인한 등교개학 연기로 상담 횟수 감소
			실적	4,500	5,493	
			달성률(%)	97.51	78.47	
<b>전략목표 IV: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b>						
IV-1.(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학교)	7. 민방위대피훈련 참여 실적(%)	(누적실시학교수)/ (누적전체학교수)×100	목표	96	95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부 민방위의 날 훈련 취소 알림에 의거 전체 미실시
			실적	미실시	95.11	
			달성률(%)	-	100.12	
IV-3.(미래교육에 적합한 교육환경과 공간 혁신)	2. 디자인 중심의 설계공모 운영률(%)	(실제 운영수/ 운영계획 목표수)×100	목표	84	80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 · 시행(2019.12.19.)으로 절차 이행에 대한 추가 기간 소요 불가피 - 예측치 못한 학교시설사업 관련 민원 및 학교의견 수렴 절차 발생으로 사업추진 지연
			실적	76	400	
			달성률(%)	90.48	500	
<b>전략목표 V: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b>						
V-1.(학교 자율운영체제 구축)	5. 교육공무직원 신채용자 직무 이수율(%)	(연수 이수 인원 수/연수 계획 인원 수)×100	목표	88		참여도가 낮고 기존 직장에서의 업무 인수인계 등의 사유로 조퇴 등이 잦음
			실적	63.24	신규	
			달성률(%)	71.86		
V-2.(학부모, 시민과 함께 더 넓은 학교 만들기)	1. 학부모교육 참여증가율(%)	(당해연도 학부모교육 참여인원/전년도 학부모교육 참여)×100	목표	110		집합연수 대체 온라인 원격연수로 전면 전환하여 실시하였으나 전년도 대면 연수 대비 참여율은 하락
			실적	94.40	신규	
			달성률(%)	85.82		
	3. 예산안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자문의견 반영률(%)	(자문의견 중 예산편성 반영 건수/전체 자문의견 제출 건수)×100	목표	82.50	80	사업 예산의 전문 영역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자문 의견에 대한 영역분류의 모호성으로 인해 반영 결과 감소
			실적	76.60	84.21	
			달성률(%)	92.85	105.26	
V-3.(현장 중심의 교육행정 조직문화)	7. 교원노사관계 직무연수 이수율(%)	(연수 이수 인원 수/연수 신청 인원 수)×100	목표	97	97	연수 신청 후 코로나19로 인하여 갑작스런 취소 인원 발생
			실적	92.61	88.78	
			달성률(%)	95.47	91.53	

## 바. 실·국별 주요검토사항

### 1) 감사관

□ 감사관리(공익제보포상금제운영 등) - 결산서 40쪽

(단위: 천원)

구분 (세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증	감				
<b>감사관리</b>	<b>787,370</b>	<b>0</b>	<b>9,200</b>	<b>△9,200</b>	<b>787,370</b>	<b>606,180</b>		<b>181,190</b>
감사사례중심 현장지원연수	14,520	0	0	0	14,520	13,324	0	1,196
감사요원 연수 및 교육	28,590	0	0	0	26,190	19,192	0	6,998
공익제보센터 운영	21,860	0	0	0	25,860	21,902	0	3,958
공익제보 포상금제 운영	300,000	0	4,000	0	304,000	303,990	0	10
공직자윤리 위원회운영 및 감사자문 위원회운영	4,200	0	0	0	4,200	3,272	0	928
교육행정지원 센터운영	32,400	0	0	0	32,400	31,419	0	981
반부패 청렴정책추진	51,250	0	5,200	△5,200	53,650	44,239	0	9,411
시민감사관 운영	246,040	0	0	△4,000	238,040	108,652	0	129,388
외부기관감사	9,900	0	0	0	9,900	11,117	0	△1,217
학교자율 종합감사운영	54,760	0	0	0	54,760	29,758	0	25,002
학교지원중심의 감사운영개선	23,850	0	0	0	23,850	19,315	0	4,535

- 2020년도 감사관리 예산은 7억 8천 7백만원으로 전용증감은 9백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6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천 1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감사관리 전용의 경우 반부패청렴정책추진의 5백만원은 2020년 교육청의 신년 업무보고시 교육감 지시사항(서울교육 정책 홍보시, 청년층과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참여 방안 모색)에 따라 「2020년 서울교육 청렴 홍보계획(' 20.2.17)」을 수립하여 청렴콘텐츠 공모 및 시상을 위해 운영비(210) 예산의 일부를 보전금(310)으로 전용한 것이고,

공익제보포상금제운영 4백만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상근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참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음에 따라 불용예산액 중 일부를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구조금으로 전용한 것임 (결산서 330p 참고).

- 이와 관련해서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교육청은 사업축소, 조정 등의 이유로 4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2020년 감사관리 전체 불용율이 23.01%로 2019년 2.35%보다 약 10배 정도 증가하였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교육청이 개별 사업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를 감액·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했어야 했던 것으로 사료됨.

- 특히 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별도의 예산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운영비를 민간행사지원금 보전금으로 전용한 것은 별도 사업에 대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함은 물론 예산의 예측가능성과 계획성의 원칙을 저해하는 재정운용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교육청은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소요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집행계획 등을 통해 적정사업비가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음.

## 2) 총무과, 기획조정실

- 지방공무원인건비 불용률 증가 - 결산서 41, 52, 64쪽

(단위: 천원)

구분 (세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증	감				
<b>지방공무원 인건비</b>	<b>505,274,074</b>	<b>0</b>	<b>1,360,000</b>	<b>△1,360,000</b>	<b>505,274,074</b>	<b>481,278,261</b>		<b>23,995,813</b>
명예퇴직 수당	3,720,000	0	0	0	3,720,000	2,526,281		1,193,719
법정부담금	80,242,920	0	0	0	80,242,920	76,027,035		4,215,885
보수	399,502,734	0	0	0	399,502,734	382,018,673		17,484,061
직급보조비	13,687,200	0	0	0	13,687,200	13,099,665		587,535
맞춤형 복지비	8,121,220	0	1,360,000	△1,360,000	8,121,220	7,606,607		514,613

- 교육청의 2020년 지방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은 239억 9천 6백만원으로, 교원인건비 불용액 92억 2천만원과 계약제교원인건비 105억 4천 5백만원을 합친 잔액 보다 42억 3천 1백만원이 많음.

### [표-47] 2020년 인건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

세부 사업	급여 종류	본예산액 (A)	추경증액 (B)	변경 사용증감 (C)	예산현액 (D=A+B+C)	집행액 (E)	집행잔액	
							(F=D-E)	예산현액 대비 비율 (F/D)
교원 인건비	소 계	3,806,540,882	-109,276,250	10,363,713	3,707,628,345	3,698,407,418	9,220,927	0.2%
	보수	3,048,591,356	-26,048,977	10,363,713	3,032,906,092	3,024,707,177	8,198,915	0.3%
	직급 보조비	9,180,000	0	0	9,180,000	8,978,987	201,013	2.2%
	법정 부담금	592,055,126	3,128,097	0	595,183,223	595,183,223	0	0.0%

	명예퇴직당수	109,854,000	-86,355,370	0	23,498,630	23,272,182	226,448	1.0%
	맞춤형복지비	46,860,400	0	0	46,860,400	46,265,849	594,551	1.3%
지방공무원 인건비	소 계	504,871,575	402,499	0	505,274,074	481,278,261	23,995,813	4.7%
	보수	400,513,236	-1,010,502		399,502,734	382,018,673	17,484,061	4.4%
	직급보조비	12,691,200	996,000		13,687,200	13,099,665	587,535	4.3%
	법정부담금	80,005,919	237,001		80,242,920	76,027,035	4,215,885	5.3%
	명예퇴직당수	4,340,000	-620,000		3,720,000	2,526,281	1,193,719	32.1%
	맞춤형복지비	7,321,220	800,000		8,121,220	7,606,607	514,613	6.3%
계약제교원 인건비	소 계	264,402,252	2,449,459	-10,000,000	256,851,711	246,306,847	10,544,864	4.1%
	보수(기간제교원)	208,422,655	1,947,654	0	210,370,309	206,201,584	4,168,725	2.0%
	보수(시간외)	10,454,400		-7,000,000	3,454,400	3,050,569	403,831	11.7%
	퇴직금관리	16,280,000		0	16,280,000	10,967,961	5,312,039	32.6%
	법정부담금	24,345,197	11,805	-3,000,000	21,357,002	20,817,409	539,593	2.5%
	맞춤형복지비	4,900,000	490,000	0	5,390,000	5,269,325	120,675	2.2%

- 더욱이 지방공무원 인건비 불용규모는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2018년 70억 2백만원, 2019년 177억 8천만원, 2020년 239억 9천 6백만원).

[표-48] 2018~2020 정규직 인건비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구분	2020			2019			2018		
	예산현액	지출액(비율)	집행잔액(비율)	예산현액	지출액(비율)	집행잔액(비율)	예산현액	지출액(비율)	집행잔액(비율)
합 계	4,271,289,074	4,237,032,630 (99.2%)	34,256,444 (0.8%)	4,261,572,810	4,145,135,744 (97.3%)	116,437,066 (2.7%)	4,072,386,760	4,042,270,242 (99.3%)	30,116,518 (0.7%)
교원 인건비	3,707,628,345	3,698,407,418 (99.8%)	9,220,927 (0.2%)	3,735,111,177	3,639,637,783 (97.4%)	95,473,394 (2.6%)	3,567,553,039	3,547,434,522 (99.4%)	20,118,517 (0.6%)
교육 전문직 인건비	58,386,655	57,346,952 (98.2%)	1,039,703 (1.8%)	52,235,816	49,051,865 (93.9%)	3,183,951 (6.1%)	50,071,494	47,075,598 (94.0%)	2,995,896 (6.0%)
지방공무원 인건비	505,274,074	481,278,260 (95.3%)	23,995,814 (4.7%)	474,225,817	456,446,096 (96.3%)	17,779,721 (3.7%)	454,762,227	447,760,122 (98.5%)	7,002,105 (1.5%)

- 세부적으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살펴보면, 교육청은 2020년 본예산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 43억 4천만원(예상 신청인원 70명 기준)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실제 명예퇴직수당 신청인원이 39명에 불과하여 25억 2천 6백만원만 지출되었고 이에 따라 11억 9천 4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표-49] 2020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집행내역**

(단위 : 명, 천원)

구분	신청인원	수용인원	수용률	집행액
6월말	18	18	100%	1,249,781
12월말	21	21	100%	1,276,500
계	39	39	100%	2,526,281

- 이와 관련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한 평균인원이 약 53명이었는바, 2020년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당초 편성단계에서부터 다소 과한 편성이었다 할 수 있음.<sup>13)</sup>

**[표-50] 2016~2019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수용인원**

(단위 : 명, 백만원)

2016년 집행		2017년 집행		2018년 집행		2019년 집행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43	2,231	55	3,072	62	3,383	54	2,964

13)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육청은 「제3회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기존 70명 기준인원을 60명으로 조정하여 약 6억 2천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음.

- 특히 지방공무원인건비는 전체 정규직 인건비 4조 2,712억 8천 9백만원 중 11.8%에 불과하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인건비 사업 중 다수의 불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매년 집행잔액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인건비 수요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연도별 인건비 집행 추이 등을 통해 객관적인 추계가 가능한 고정지출의 경직성 경비인 만큼 매년 인건비의 과다 불용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 하겠는바,

교육청은 예산추계의 정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재정운용의 건전성 등의 측면에서 앞으로 인건비 편성과 집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자체재원 추경 증액 사업 중 불용액 과다 발생(학교기본운영비, 학기중토공휴일중식지원, 학기중평일중식지원) - 결산서 53, 60쪽

(단위: 천원)

구분 (세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증	감				
<b>학교운영비지원</b>	<b>271,511,447</b>	<b>0</b>	<b>0</b>	<b>0</b>	<b>271,511,447</b>	<b>267,555,936</b>	<b>0</b>	<b>3,955,511</b>
학교기본운영비	271,511,447	0	0	0	271,511,447	267,555,936	0	3,955,511
<b>토공휴일중식 지원</b>	<b>9,435,326</b>	<b>0</b>	<b>0</b>	<b>0</b>	<b>9,435,326</b>	<b>7,442,446</b>	<b>0</b>	<b>1,992,880</b>
학기중토공휴일 중식지원	9,435,326	0	0	0	9,435,326	7,442,446	0	1,992,880
<b>학기중급식비 지원</b>	<b>22,686,998</b>	<b>0</b>	<b>8,455,596</b>	<b>△8,455,596</b>	<b>22,686,998</b>	<b>17,408,908</b>	<b>0</b>	<b>5,278,090</b>
학기중평일 중식지원	22,686,998	0	8,455,596	△8,455,596	22,686,998	17,408,908	0	5,278,090



- 학교기본운영비와 학기중토공휴일중식지원 및 학기중평일중식지원은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및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서 코로나19 감염 차단 등 방역을 위한 예산과 급식단가 현실화를 통한 급식의 질 확보 등을 이유로 증액된 사업임.
- 그러나 동 사업들은 학생수 및 학급수 감소 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산출 인원을 과다책정 등 예산추계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결여된 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게 되었음.
- 이러한 예산편성은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고착시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저해하는 것인바, 교육청은 최소 3년간 집행실적을 검토·분석하는 등 사업별 산출기초의 정확성을 향상시켜 적정예산이 형평성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sup>14)</sup>

### 3) 교육정책국

□ [교육혁신과] 교육과정운영(서울형자유학기제운영) - 결산서 69쪽

(단위: 천원)

구분 (세세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변경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 도 이월액	집행 잔액
			증	감				
교육과정운영	5,728,094	0	246,575	246,575	5,728,094	4,567,546	1,100,000	60,548
서울형자유학 기제운영	357,876	0	0	76,000	281,876	224,617	0	57,259

- 2020회계연도 교육과정운영 사업 중 서울형자유학기제운영 예산액은 3억 5천 8백만원이며, 이 중 변경 감액이 7천 6백만원, 지출액은 2

14) 이러한 산출기초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교육급여지원의 경우도 본예산 산출인원 대비 약 7.5%(3,730명)가 줄어들어 11억 6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억 2천 5백만원으로 5천 7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서울형자유학기제운영 사업은 학생활동 중심 수업, 과정중심 평가, 진로탐색 등의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원 및 학부모 연수 및 관련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sup>15)</sup>.

동 사업의 집행잔액은 5천 7백만원으로, 총 집행잔액의 75%(4천 3백만원)는 자유학기제 연수지원 사업에서 발생하였음.

**[표-51] 2020년 서울형자유학기제운영 세부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세세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률
서울형자유학기제운영	281,876	224,617	0	57,259	20.3%
자유학기제 연수지원	157,776	114,948	0	42,828	27.1%
자유학기제 운영기반구축	124,100	109,669	0	14,431	11.6%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동 사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연수 관련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사업별 예산 조정을 위해 5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고, 동 사업은 그 중 2차례(3차, 4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이 조정된바 있음.

15) 2020년 예산안부터 '서울형자유학기제운영' 사업의 예산 중 단위학교에서 자유학기(학년)를 운영하는 예산은 교육혁신과 '서울형자유학기제운영'사업 예산이 아니라 예산담당관 '학교기타운영비'로 편성되었고, 교육혁신과 '서울형자유학기제운영'사업에서는 교원 및 학부모 연수(자유학기제 연수지원) 및 관련 컨설팅 운영 등(자유학기제운영기반구축)의 예산만 편성되었음.

**[표] 자체예산 (단위학교)자유학년제 운영 지원 사업의 예산편성 변경 사항**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정책사업	교수·학습활동지원	학교재정지원관리
세부사업	교육과정운영	학교운영비지원
세세부사업	서울형자유학기제운영	학교기타운영비
담당조직	교육혁신과	예산담당관(학교회계팀)
예산편성액	957,500	5,775,000

- 그러나 동 사업은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연수지원 사업 예산을 오히려 8천 5백만원 증액한 후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억 2천 9백만원원을 감액했으나 최종 불용률은 20.3%에 달함.

[표-52] 2020년 서울형자유학기제운영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

	본예산 (A)	3차추경 (B)	4차추경 (C)	예산액 (A+B+C)
계	602,260	85,027	△329,411	357,876

- 동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해 연수 등의 대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충분히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증액 감액을 반복하며 최종 불용한 것으로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 편성이 매우 근시안적이고 행정편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의회에 예산안 제출에 대한 무게감을 가지고 각 사업의 추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임.

□ [교육혁신과] 교과서지원 - 결산서 72쪽

(단위 : 천원)

구 분 (세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증	감				
교과서지원	122,097,883	0	28,000,000	28,000,000	123,814,706	113,540,048	0	10,274,658
초·중학교 교과용도서	68,645,018	0	0	0	68,645,018	58,707,717	0	9,938,301
특수학교 교과용도서	452,385	0	0	0	452,385	232,572	0	219,813
학력인정평생교 육시설교과서	384,092	0	0	0	384,092	282,399	0	101,693

고등학교 교과용도서	16,194,669	0	0	0	16,194,669	16,194,667	0	0
고등학교 특수교육 대상자교과서	67,161	0	0	0	67,161	51,313	0	15,848
교과용도서 소송관련 공급가격차액	36,354,558	0	28,000,000	28,000,000	38,071,380	38,071,380	0	0

- 2020회계연도 교과서지원의 예산액은 1,220억 9천 8백만원이며, 이 중 전용증감은 280억이고 지출액은 1,135억 4천만으로 102억 7천 5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이 중 ‘초·중학교교과용도서’ 사업은 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에게 학습에 필요한 교과용도서를 공급하는 것으로, 2020년도 본예산에 578억 1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제3차)을 통해 다음연도 교과용도서 예산의 20%를 출판 업체에 선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108억 2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표-53] 초·중학교교과용도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잔액
	본예산	추경 예산	예산액		
초·중학교 교과용도서	57,816,016	<b>10,829,002</b>	68,645,018	68,645,018	<b>9,938,301</b>

-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108억 2천 9백만원 중 지출액은 30억 2천 6백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된 예산의 72.1%

가 불용처리되었음.

[표-54] 초·중학교교과용도서 추가경정 증액예산의 불용률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세세부사업)	추가경정 증액예산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초중학교 교과용도서	10,829,002	3,026,205	7,802,7997	72.1%

- 이와 같이 동 예산에서 불용이 과도하게 발생한 것은 교과용도서 출판업체의 선금 신청률이 낮았기 때문으로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선금 신청에 대한 출판업체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결과인바, 서울시교육청의 안이한 예산편성과정을 방증한다 할 것임.

- 한편 교과서지원 사업 중 ‘특수학교교과용도서’ 사업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교과용 도서를 공급하는 것이며,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교과서’ 사업은 초·중학교 과정의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교과용도서를 공급하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특수학교교과용도서’의 단가는 88,270원, 학생 수는 5,125명으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교과서’의 단가는 111,980원, 학생 수는 3,430명으로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표-55] 2020년 특수학교교과용도서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교과서 예산 산출 내역

[특수학교교과용도서]	
· 학교회계전출금	
- 특수학교 교과용도서 구입	88,270원(단가) X 5,125명(학생수) = 452,385 천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교과서]	
· 민간이전	
- 초·중과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과용도서 구입	111,980원(단가) X 3,430명(학생수) = 384,092 천원

- 그러나 2020년 실제 ‘특수학교교과용도서’의 단가는 57,030원으로 예산안 산출 단가(88,270원)가 실제 단가 보다 31,240원(54.7%)높게 산출되었으며, 지원 대상 학생 수도 예산안 산정 학생 수(5,125명)가 실제 지급 학생 수(4,069명)보다 1,056명(25.9%)높게 산정되어 ‘특수학교교과용도서’의 불용률은 48.6%에 이르고 있음.
- 또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교과서’의 2020년 실제 단가는 88,721원으로 예산안 산출 단가(111,980원)가 실제 단가 보다 23,259원(26.2%)높게 산출되었으며, 지원 대상 학생 수도 예산안 산정 학생 수(3,430명)가 실제 지급 학생 수(3,199명)보다 231명(7.2%)높게 산정되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교과서’의 불용률도 26.5%에 이르고 있음<sup>16)</sup>.
- 이와 같이 현재 ‘특수학교교과용도서’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교과서’의 예산안 편성 당시 단가 및 학생 수 산출 내역은 실제 단가 및 지급대상 학생 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바

서울시교육청은 교과용도서 예산 산출 방식에 대한<sup>17)</sup>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해 교과용도서 사업의 합리적인 예산산출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표-56] 2020년 특수학교교과용도서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교과서 실제 집행 현황

(단위 : 원, 명)

구 분	2020년 실제 단가 (A= C/B)	2020년 실제 교부 학생수 (B)	2020년 실제 지출액 (C)
특수학교교과용도서	57,030	4,078	232,572,000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교과서	88,721	3,199	282,399,000

16)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교과서’는 지난 4년 간 매년 불용률이 발생하고 있음(2017년 17.9%, 2018년 20.1%, 2019년 9.4%)

17) 서울시교육청의 교과용도서 구입 단가는 “예산편성 이전 연도의 교과용도서 예상 지출액 / 예산편성 이전 연도의 학생 수 (2019년 4월 교육통계자료)”로 산정됨.

□ [유아교육과] 사립유치원지원(공영형사립유치원운영지원) - 결산서 76쪽

(단위: 천원)

구분 (세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증	감				
사립유치원지원	66,607,432	3,713,325	0	0	70,320,757	62,093,034	252,920	7,974,803
공영형사립 유치원운영지원	760,970	3,528,884	0	0	4,289,854	1,894,034	0	2,395,820

- 2020회계연도 사립유치원지원 사업 중 공영형사립유치원운영지원 예산은 7억 6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고 2019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2억 9천만으로, 이 중 18억 9천 4백만원이 지출되어 23억 9천 6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공영형사립유치원운영지원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 중 하나로 2017년에 2개 유치원, 2018년에 2개 유치원이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2019년부터는 추가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2019 회계연도에 35억 2천 9백만원이 명시이월되었음.
- 이와 같이 공영형사립유치원의 추가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선정 및 지원기준이 다소 까다롭기 때문인바,

공영형사립유치원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경우 반드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며 법인 전환 시 수익용 기본재산을 출연해야 함<sup>18)</sup>.

18)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조(수익용기본재산) ① 사립의 각급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이하 "특수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③ 시·도교육감은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도시개발구역안에 위

- 그러나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위법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공영형사립유치원 추가 지정은 2020년도에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예측되었음<sup>19)</sup>.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예산에서 공영형사립유치원 추가 선정을 이유로 35억 2천 9백만원을 이월하였고 2020년 추가경정예산(제4차)을 통해 16억 4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으나 결국 23억 9천 6백만원(67.9%)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이와 같이 동 사업은 법령의 개정 없이는 사업추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제도 개선 없이 의욕만 가지고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제도가 사업의 추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법제도의 개선이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4) 평생진로교육국

□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교폭력예방지원(학교폭력예방대책 등) - 결산서 100쪽

(단위: 천원, %)

구분 (세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율
			증	감					
학교폭력예방지원	12,019,060	21,950	2,000	-2,000	12,041,010	9,960,592	11,500	2,068,918	17.2%
학교폭력 예방대책	6,855,982	-	-	-	6,855,982	5,008,586	-	1,847,396	26.9%

치한 각급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 및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19)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검토보고서, 63쪽.



- 2020년도 “학교폭력예방지원” 예산액은 120억 1천 9백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천 2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20억 4천 1백만원임. 이중 99억 6천 1백만원이 지출되고, 1천 1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0억 6천 9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율은 17.2%임.
- 동 사업 중 ‘학교폭력예방대책’ 사업은 예산현액 68억 5천 6백만원 중 18억 4천 7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율이 26.9%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예방지원’ 전체 불용액의 89.3%를 차지하고 있음.

[표-57] ‘학교폭력예방대책’ 사업 중 심의위원회 운영 결산 현황

(단위: 천원)

세세부사업	사업항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불용율
학교폭력예방대책	심의위원회 운영	2,207,200	772,519	1,434,681	65.0%

- ‘학교폭력예방대책’의 과도한 집행 잔액 발생의 가장 큰 요인은, 2019년 8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도에 각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임.
-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시 1년 동안의 심의위원회 개최 추계를 2,700회로 추정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728회만 개최되었는바,

최소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2020.9.15. 시의회 의결) 편성 당시까지 개최된 현황을 검토하여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다더라면 관련 예

산에 대한 대폭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행 연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의 감액조치도 행하지 않았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정책에 대한 분기별 사업 분석 등을 통해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될 우려가 있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58] 연수 등 관련 예산이 조정되지 않은 사업항목

(단위 : 천원)

세세부사업	사업내역	예산액
학교폭력예방대책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연수	61,380

□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생상담활동지원(학생상담센터운영 등) - 결산서 102쪽

(단위: 천원, %)

구분 (세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불응율
			증	감					
학생상담활동지원	17,553,245	1,704,778	-	-	19,258,023	17,105,586	418,073	1,734,364	9.0
117학교폭력 신고센터운영	465,401	-	-	-	465,401	413,357	-	52,044	11.2
Wee프로젝트 운영지원(특별교부금)	158,000	-	-	-	158,000	157,333	-	667	0.4
가정형Wee센터구축 (특별교부금)	-	800,973	-	-	800,973	800,116	-	857	0.1
단위학교 상담지원	12,953,875	-	-	-	12,953,875	11,684,746	-	1,269,129	9.8
학교폭력피해학생 교육지원(특별교부금)	277,000	-	-	-	277,000	237,510	-	39,490	14.3
<b>학생상담 센터운영</b>	<b>3,615,969</b>	<b>903,805</b>	-	-	<b>4,519,774</b>	<b>3,759,949</b>	<b>418,073</b>	<b>341,752</b>	<b>7.6</b>
화해분쟁조정지원 (특별교부금)	83,000	-	-	-	83,000	52,575	-	30,425	36.7

- 2020년도 “학생상담활동지원” 예산액은 175억 5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7억 5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92억 5천 8백만원임. 이중 171억 6백만원이 지출되고 4억 1천 8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7억 3천 4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율은 9.0%임.

(단위: 천원)

세세부사업	예산현액 (A)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총 이월액 (B)	이월율 (B/A*100%)
학생상담센터운영	4,519,774	35,000	383,073	418,073	9.2%

- “학생상담활동지원” 사업 중 ‘학생상담센터운영’ 예산현액은 45억 2천만원으로 이중 4억 1천 8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이월율은 9.2%임. 이월액 중 유형자산비 명시이월액은 3천 5백만원, 시설비 사고이월액은 3억 8천 3백만원임.
- 이와 같이 예산의 이월이 발생한 것은 강서 Wee센터의 이전이 지연되어 2020회계연도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송정중학교 교사동에 위치하였던 강서 Wee센터는 2020년 5월 학교 측에서 관리상의 문제로 이전을 요청하였으나 이전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학교창고 철거후 컨테이너 건물 건축을 위해 2020년 10월에 관련 예산을 재배정하였으나 연도내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된 것임.
-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도에도 공립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2개소를 추가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유희부지 활용 등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설립 부지 결정이 지연되면서 관련 예산 전액(6억 6백만원)을 명시이월하고, 2020년도에도 집행되지 않아 결국 이월예산 전액이 불용하였는 바,

- 이런 사례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인바, 이런 이월과 불용으로 인해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배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운영지원(퇴직교직원인생2모작사업 등) - 결산서 95쪽

(단위: 천원, %)

구분 (세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율
			증	감					
평생학습운영지원	6,332,128	160,000	55,300	-55,300	6,492,128	5,820,045	-	672,083	10.4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운영	2,148,540	-	55,300	-55,300	2,148,540	1,979,488	-	169,052	7.9
문해교육기반 구축특별교부금	242,424	160,000	-	-	402,424	402,424	-	-	-
장애성인 평생교육	953,080	-	-	-	953,080	921,370	-	31,710	3.3
정보소외계층 프로그램지원	523,260	-	-	-	523,260	490,707	-	32,553	6.2
<b>퇴직교직원   인생2모작사업</b>	<b>824,526</b>	-	-	-	<b>824,526</b>	<b>502,179</b>	-	<b>322,347</b>	<b>39.1</b>
평생교육 활성화	8,500	-	-	-	8,500	8,495	-	5	0.1
평생학습관 지정맞운영	301,535	-	-	-	301,535	244,167	-	57,368	19.0
평생학습 협력망구축	209,463	-	-	-	209,463	153,764	-	55,699	26.6
학교평생교육 활성화	1,120,800	-	-	-	1,120,800	1,117,451	-	3,349	0.3

- 2020년도 “평생학습운영지원” 예산액은 63억 3천 2백만원으로 전용증감은 5천 5백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억 6천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4억 9천 2백만원임. 이중 58억 2천만원이 지출되고 6억 7천 2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율은 10.4%임.
- 동 사업 중 ‘퇴직교직원인생2모작사업’은 예산현액 8억 2천 5백만원 중 3억 2천 2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율이 39.1%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평생학습운영지원’ 전체 불용액의 48%에 해당하는 수준임.

- 2020년도에 서울시교육청은 4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동 사업에서 2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율이 상당히 높은 것은 예산 추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특히 2020년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퇴직교직원의 봉사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 사업의 경우 집행이 어려울 것임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부분의 직접 대면 연수나 집합 행사는 취소 또는 최소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경우 연수 등 사업 대부분에 대한 감액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표-59] 연수 등 관련 예산이 조정된 사업항목**

(단위: 천원)

연번	세세부사업	사업항목	추경 감액
1	퇴직교직원인생2모작사업	「행복한상담실」봉사단운영	1,090
2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워크숍	6,220

**[표-60] 연수 등 관련 예산이 조정되지 않은 사업항목**

(단위: 천원)

연번	세세부사업	사업항목	예산액
1	퇴직교직원인생2모작사업	퇴직(예정)교직원연수	6,280
2		교육청각부서·산하기관 및 유관기관협력사업	12,700
3		「기초학력반」봉사단운영	1,960
4		「그린에듀」봉사단운영	11,300
5		「Book소리지원단」운영	6,360
6		「숲사랑·숲체험」봉사단운영	290

- 더욱이 동 사업은 2019년도에도 봉사활동비 단가 하락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예산의 감액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시에 “평생학습운영지원” 전체 불용액의 85.7%를 차지하는 7억 7천 1백만원이 불용된바 있음.

[표-61] 2019년도 '퇴직교직원인생2모작사업'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세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율
			증	감					
평생학습운영지원	7,503,158	-	39,298	-39,298	7,503,158	6,443,467	160,000	899,691	12.0%
<b>퇴직교직원 인생2모작사업</b>	<b>1,699,198</b>	-	-	-	<b>1,699,198</b>	<b>928,415</b>	-	<b>770,783</b>	<b>45.4%</b>

- 이러한 예산 집행 모습은 예산운용에 있어서의 교육청의 안이한 태도를 방증하는 것으로, 교육청은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진로직업교육과] 특성화고장학금지원 - 결산서 106쪽

(단위: 천원,%)

구분 (세세부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율
	본예산	추경 (3차)	합계					
특성화고장학금지원	13,086,337	△1,064,105	12,022,232	12,022,232	11,438,942	0	583,290	4.9%
특성화고무상 교육비지원	10,336,337	△1,064,105	9,272,232	9,272,232	8,833,898	0	438,334	4.7%
특성화고 장학금지원 (특별교부금)	2,750,000	0	2,750,000	2,750,000	2,605,044	0	144,956	5.3%

- 2020회계연도 “특성화고장학금지원”은 예산현액 120억 2천 2백만원 중 114억 3천 8백만원이 지출되고, 5억 8천 3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특성화고장학금지원”은 직업교육에 재능이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특성화고 재학생들에게<sup>20)</sup>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교육부 대응투자(교육청 80%, 교육부 20%) 사업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4.9%로 낮으나 예산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불용액이 5억 8천 3백만원에 달하고 있음.
-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원인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수 감소와 입학 후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학 등 학생수 변동에 따른 특성화고장학금 지원금의 집행잔액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2020년 예산편성 당시 특성화고장학금 지원 대상 학생을 고교 무상교육 실시<sup>21)</sup>에 따라 2,3학년 재학생은 제외한 1학년 8,820명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 2020년도에 지원된 학생은 7,618명으로 1,202명의 오차를 보이고 있음.

[표-62] 특성화고장학금 지원대상 학생수

(단위: 명)

구 분	본예산 지원대상 학생수(A)	실제 지원 학생수(B)	증감(B-A)
2018년도	28,514명	26,159명	2,355명
2019년도	27,440명	26,164명	1,274명
2020년도	8,820명	7,618명	1,202명

20) 지원제외 : 법정면제.지원자, 직장의 학비지원 대상자, 기타 외부지원자

지원금액 : 1인당 입학금 14,100원, 수업료 1,450,800원

21) 무상교육 : 3학년('19.2학기) → 2,3학년('20년) → 전학년('21년)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수 감소 및 변동 등으로 인한 예산의 과다 불용을 우려하여 2020년 제3차 추경을 통한 예산의 감액조치를 실시해왔으며,

2020회계연도에는 교육통계상 학생수 기준(2020.3.1. / 14,226명)으로 장학금 지원 대상 비율 62%를 적용하여 지원대상 학생수를 축소·반영하여 감액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임.

[표-63] 특성화고장학금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률
2018년	40,036,169	38,572,666	1,463,502	3.6%
2019년	38,885,179	37,756,671	1,128,508	2.9%
2020년	12,022,232	11,438,942	583,290	4.9%

- 이와 관련하여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수는 사회적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대학진학을 위한 일반고 진학 집중, 직업계고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선호도 감소 등으로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20년도 예산 편성 당시의 지원대상자수와 실제 지원대상자수 간의 오차가 1,200명 이상(1,202명) 발생하였다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추계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추계 시 학생수 감소 등 사회적 추이와 동향을 고려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진로직업교육과]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 결산서 106쪽

(단위: 천원, %)

구분 (세세부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율
	본예산	추경(3차)	추경(4차)	합계					
진로직업교육과정운영	365,820	△60,000	△60,000	245,820	245,820	209,097	0	36,723	14.9%
일반고학생직업 교육과정운영지원	365,820	△60,000	△60,000	245,820	245,820	209,097	0	36,723	14.9%

- 2020회계연도 “일반고학생직업교육과정운영지원”은 예산현액 2억 4천 6백만원 중 2억 1천만원이 지출되고, 3천 7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일반고학생직업교육과정운영지원” 사업은 일반고 3학년 학생 중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지역 실용음악 전문대학과 직업교육과정을 연계 위탁하여 학생에게 매월 3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2020년 예산편성 당시 전문대학 직업위탁 교육과정 지원 대상 학생을 120명으로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 2020년도에 지원된 학생은 79명으로 41명의 차이가 발생하였는바, 사업 예산 중 14.9%에 이르는 3천 7백만원이 불용됨.

[표-64]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률
2018년	364,500	308,557	55,943	15.3%
2019년	364,500	361,550	209,097	0.8%
2020년	245,820	209,097	36,723	14.9%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 동 사업 예산이 과대 불용될 것을 우려하여 2020년 3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감액하였으나(△6천만원)

이러한 감액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적어 또 다시 4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감액(△6천만원)하였으나 결국 동 사업예산의 14.9%가 불용된 것임.

[표-65]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지원대상 학생수

(단위: 명)

구 분	본예산 지원대상 학생수(A)	실제 지원 학생수(B)	증감(B-A)
2018년도	120명	126명	6명
2019년도	120명	94명	△26명
2020년도	120명	79명	△41명

- 더욱이 2019회계연도 결산 당시 동 사업의 위탁대상이 94명임에도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위탁대상을 120명으로 동일하게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추계하여 계속적으로 불용이 발생하도록 하였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추계 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임.

- [체육건강문화예술과] 학생체육활성화지원(강북권학생체육관건립기본 계획조사) - 결산서 108쪽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액	집행잔액
강북권학생체육관건립 기본계획조사	0	100,000	100,000	0	100,000

- 2020회계연도 “강북권학생체육관건립기본계획조사”의 경우 예산현액 1억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 강북권학생체육관건립 사업은 미래 지향적 체육 복합시설 건립 및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현장 지원 중심의 체육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체육교육의 교육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표-66] 2018~2019년 강북권학생체육관건립기본계획조사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2018	강북권학생체육관 건립기본계획조사	147,000	102,846	0	20,400	23,754
2019	강북권학생체육관 건립기본계획조사	100,000	0	100,000	0	0

-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18년도에 강북권 학생체육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2019년도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위한 건립 기본조사 계획 용역비 1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지만, 서울시 도시공원관리위원회 안전 미상정으로 용역비 전액이 2020회계연도로 전액 명시이월된 것임.
- 그러나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20년까지 건립부지 사용에 대한 서울시-자치구의 협의, 재원분담 협의, 사업 대상 부지 등 사전 절차 조차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도 예산에 강북권 학생체육관건립 추진을 위한 기본조사계획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여 명시이월하였으나, 이월된 예산 1억원 전액을 2020년도에 불용하였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예산편성에 앞서 서울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재원 분담 등 사전 절차를 충실히 이행·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체육건강문화예술과] 학교보건관리 - 결산서 110쪽

(단위: 천원)

구분 (세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증가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율
				증	감					
학교보건관리	56,729,260	0	3,179,187	10,656	-10,656	59,908,447	58,281,521	0	1,626,928	2.7
당노학생 건강관리지원	50,000	-	-	-	-	50,000	270	-	49,730	99.5
방역강화활동 (국고보조금)	1,241,625	-	-	-	-	1,241,625	1,241,625	-	0	0
보건교육 및 연수운영	17,700	-	-	-	-	17,700	10,700	-	7,000	39.5
보건교육 연구활동지원	36,800	-	-	-	-	36,800	41,439	-	-4,639	-12.6
소모성방역 물품지원 (특별교부금)	590,489	-	-	-	-	590,489	590,390	-	99	0
자가진단시 스템구축 (특별교부금)	24,589	-	-	-	-	24,589	24,589	-	0	0
정신건강관리	19,760	-	-	-	-	19,760	8,069	-	11,691	59.2
코로나19감 염대책사업	5,257,200	-	-	-	-	5,257,200	5,257,200	-	0	0
학교감염관리	33,640,084	-	3,179,187	10,656	-10,656	36,819,271	36,609,827	-	209,444	0.6
학교감염관리 (서울시전입금)	1,500,000	-	-	-	-	1,500,000	1,495,943	-	4,057	0.3
학교감염관리 (특별교부금)	9,308,359	-	-	-	-	9,308,359	9,308,229	-	130	0

구분 (세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증가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율
				증	감					
학교보건운영	11,770	-	-	-	-	11,770	11,188	-	582	4.9
학교보건지 원강사운영	939,864	-	-	-	-	939,864	939,850	-	15	0
학교흡연 예방교육 (국고보조금)	3,535,381	-	-	-	-	3,535,381	2,189,642	-	1,345,739	38.1
학교흡연 예방교육 (반환금)	520,941	-	-	-	-	520,941	520,941	-	0	0
학생건강 안전관리 역량강화 (특별교부금)	34,698	-	-	-	-	34,698	31,619	-	3,080	8.9

- 2020회계연도 “학교보건관리” 예산은 예산액 567억 2천 9백만원이며, 예비비증가액 31억 7천 9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99억 8백만원으로, 이중 582억 8천 2백만원이 지출되고, 16억 2천 7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율이 2.7%임.
- 학교보건관리 중 ‘당뇨학생건강관리지원’ 사업의 불용액은 5천만원으로 불용율이 9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된 불용 사유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당뇨학생프로그램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임.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2020회계연도에 추가경정예산안이 4차례 있었다는 점에서 사업의 추이를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경우 감액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였는바,  
  
추가경정예산이 부득이한 예산의 추가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업을 경정한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에는 이와 같은 사업의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5) 교육행정국

□ [학교지원과] 학교설립 지연에 따른 불용액 발생 - 결산서 117, 288쪽

(단위: 천원,%)

세부사업	목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률
학교신증설 (동진학교)		42,000	604,550	646,550	19,780	0	626,770	96.9
학교신증설 (개원2초)		100,000	1,214,463	1,314,463	0	0	1,314,463	100.0

- 2020회계연도 동진학교 ‘학교신증설’ 사업은 예산액 4천 2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 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억 4천 7백만원 중 2천만원을 지출하고 6억 2천 7백만원(96.9%)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
- 한편 개원2초 ‘학교신증설’ 사업은 예산액 1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12억 1천 4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3억 1천 4백만원은 전액 불용되었음.
- 먼저 동진학교 ‘학교신증설’ 과 관련하여 동진학교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특수학교가 없는 동부지역(동대문구, 중랑구)에 학교를 설립하고자 2012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9월 개교를 목표로 2019년에 보전금 6천만원과 건설비 5억 4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신설부지에 대한 중랑구청과의 협의지연으로 인해 사업비 전액이 명시이월된바 있음.
- 이후 서울시교육청과 중랑구청은 동진학교에 복합화시설을 추진하기로 협의(2020.4.27.)하여 학교설립계획을 변경(총사업비 474억원 →691억원)하여 추진하였으나,

2020년 6월부터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 및 공동투자심사위원회의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심사절차가 변경<sup>22)</sup>되면서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6억 2천 7백만원이 불용된 것임.

- 한편 개원2초 ‘학교신증설’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가칭)개원2초를 신설하기 위해 2019년 본예산에 건설비 12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미이행으로 설계공모가 취소됨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 되었음.

이후 개원2초 신설예산은 개포택지개발지구의 정비계획이 변경됨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2020년 예산에 편성된 설계보상금 1억원과 이월된 예산 중 12억 2백만원을 포함한 총 13억 1천 4백만원이 불용된 것임.

- 이처럼 학교신설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외부상황의 발생으로 사업이 변경·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학교신설을 위한 예산은 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사업추진 지연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함.
- 더욱이 타당성 조사와 사전검토 등 학교신설을 위한 선결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불확실한 사업에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여 불용시킨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무리한 예산 편성과 안일한 사업추진이 원인이라 할 것임.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신설과 관련한 예산 편성시 반드시 사업추진에 대한 장애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및 신설을 위한 사전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이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

22)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교육부 보도자료, 2020.5.28.

또한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의 불용발생이 명확할 경우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감액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교육재정과] 지방교육채상환을 위한 전용 - 결산서 120쪽, 344쪽

(단위 : 천원)

사업별		예산액	전용금액		예산현액	지출액
세부사업	목		증	감		
지방교육채상환		5,675,000			5,689,645	5,689,644
	상환지출		14,645			
일시차입금관리		52,000			37,355	0
	상환지출			14,645		

- 2020회계연도 “지방교육채상환”의 예산액은 56억 7천 5백만원이며, 예산현액은 56억 9천만으로 “일시차입금관리”에서 1천 5백만 원을 전용하여 지출이 이루어짐.
- 지방교육채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발행하거나 차입하는 ‘교육활동을 위한 지방채’로서,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재정법」 제11조와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특정한 사업에만 용도를 정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지정채원임.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19회계연도 중 2014년도에 발행한 학교신설분 등 총 8,529억 6천 7백만원을 조기상환하였고, 이에 따른 추가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 등 이자상환이 발생하여 이를 2020회계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였음.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자상환과 관련한 예산의 추계에 있어 2020년도 2월이 윤달(2월 29일)임을 간과하고 28일분만을 계산하였는바, 지방교육채 1일분의 이자가 부족하여 이를 일시차입금에서 1천



5백만원 전용하였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편성시 사업에 대한 추계 및 예산편성의 오류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산의 전용이 남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학교지원과, 교육시설안전과, 서부교육지원청] 역촌유치원(매입형유치원)의 리모델링사업 불용 및 개축사업추진 - 결산서 217쪽

(단위: 천원,%)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학교신증설	(역촌유치원)	696,472	3,205,536	3,902,008	3,044,173	0	857,835	22.0

- 2020회계연도 역촌유치원 ‘학교신증설’ 사업은 예산액 71억 7천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1억 5천 1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3억 2천 1백만원 전액 불용되었음.
-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3월부터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추진하였는바,<sup>23)</sup>

2020년에 매입한 역촌유치원은 1975년 건축된 유치원으로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별관동에 대한 리모델링 예산 8억 8천만원을 2020년도 추경예산을 통해 편성하였으나, 리모델링이 아닌 건물의 개축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리모델링 예산이 불

23)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구암유치원 등 5개원과 2020년 역촌유치원 등 9개원, 2021년 솔방울 유치원 1개원 등 총 15개원을 매입형 유치원을 개원·운영 중에 있음.

용된 것임.

- 이와 같은 예산의 불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사전에 매입형유치원 선정 시 대상선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시설점검 등을 실시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바, 서울시교육청은 사업계획 미흡 및 사전 조사 불충분 등으로 인한 사업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6) 기타

### [도서관]

- 계약제근로자인건비(교육공무직원 인건비) - 결산서 165쪽

(단위: 천원)

구분 (세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불용율
(강서도서관) 계약제근로자인건비	191,554	165,696	25,858	13.5%
행정기관 교육공무직원인건비	191,554	165,696	25,858	13.5%

- 2020년도 강서도서관의 계약제근로자인건비 예산액은 1억 9천 2백 만원으로, 이중 1억 6천 6백만원이 지출되고 2천 6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율은 13.5%임.

### [표-67]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결산 현황

(단위: 천원, %)

세세부사업	세목	원가통계비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불용율
행정기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	158,807	152,583	6,224	3.9
		<b>국민연금부담금</b>	<b>7,147</b>	<b>2,330</b>	<b>4,817</b>	<b>67.4</b>
	무기계약 근로자 법정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5,297	5,064	233	4.4
		산업재해보험료	1,350	762	588	43.6

	고용보험부담금	2,621	1,844	777	29.6
	퇴직급여	15,881	2,975	12,906	81.3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451	137	314	69.5

- 2020년에 강서도서관은 계약제근로자인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7명 (미화원 5명, 당직전담원 2명)의 인건비를 지출하였으며 7명 중 6명은 60세 이상이었는데,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면제 대상으로 사용자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예산은 애초부터 편성이 불필요하였음.

[표-68]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국민연금부담금 결산 현황

원가통계비목	예산현액	특수 운영직군 국민연금 (A)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 (B)	지출액 (A+B)	집행 잔액	불용율
국민연금부담금	7,147	954	1,376	2,330	4,817	67.4

- 그러나 강서도서관은 특수운영직군 종사자의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7백만원을 편성하여 그중 1백만원만 지출하였음. 그리고 일부는 특수운영직군 종사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의 보험금으로 지출하면서 결국 편성된 7백만원 중 5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이는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의 예산편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교육지원청]**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관리(교육환경보호위원회운영) - 결산서 297쪽

(단위 : 천원, %)

구분 (세세부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본예산	추경 (차)	전년도 이월금액	합계					
<b>학교환경위생관리</b>	<b>24,000</b>	<b>△7,200</b>	<b>0</b>	<b>16,800</b>	<b>16,800</b>	<b>10,300</b>	<b>0</b>	<b>6,500</b>	<b>38.7%</b>
교육환경보호 위원회운영	24,000	△7,200	0	16,800	16,800	10,300	0	6,500	38.7%

- 2020년도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은 예산현액 1천 7백만원 중 1천만원이 지출되고, 7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율이 38.7%임.
- 동 사업은 교육환경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쾌적한 학교주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2020회계연도 예산 편성 당시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한 바 있음.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의 과도한 불용율과 관련하여 민원 신청 감소 등으로 인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개최 횟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지난 3년간 평균 32%의 지속적인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과거 예산편성액과 집행을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과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속 사업의 경우 과거의 실적에 기초한 추세 분석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은 예산을 감액편성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표-68] 학교환경위생관리(교육환경보호위원회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률
2018년	26,400	17,480	8,920	33.8%
2019년	24,000	18,100	5,900	24.6%
2020년	16,800	10,300	6,500	38.7%

□ 추경 후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

(단위 : 백만원, %)

소관부서	세세부사업	본예산	추경예산	추경회차	예산현액	명시이월액	명시이월률
중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 지원센터운영	0	150	추경3차	150	150	100.0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강당겸체육관 (서울시전입금)	0	30	추경5차	30	30	100.0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냉난방개선 (특별교부금)	0	390	추경5차	390	390	100.0
북부교육지원청	강당겸체육관 (서울시전입금)	0	30	추경4차	30	30	100.0
북부교육지원청	기타증축 (서울시전입금)	0	4,430	추경5차	4430	4430	100.0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기타사업 (특별교부금)	0	340	추경5차	340	340	100.0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바닥개선 (특별교부금)	0	455	추경5차	455	455	100.0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안전관리 (드라이비트해소)	302	0	본예산	302	302	100.0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전면)	83	0	본예산	83	83	100.0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신설	0	29	추경3차	29	29	100.0
남부교육지원청	재해예방 (특별교부금)	0	179	추경5차	179	179	100.0
남부교육지원청	급식실 및 학생식당신증축	1,272	0	본예산	1272	1272	100.0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실증축	0	35	추경4차	35	35	100.0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강당겸체육관		16	추경3차	16	16	100.0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강당겸체육관 (서울시전입금)	0	2,500	추경4,5차	2500	2500	100.0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노후교사개축	0	100	추경3차	100	100	100.0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노후교사개축	0	100	추경3차	100	100	100.0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외벽개선 (특별교부금)	0	152	추경5차	152	152	100.0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창호개선 (특별교부금)	0	1,090	추경5차	1090	1090	100.0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외벽개선 (특별교부금)	0	872	추경5차	872	872	100.0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생건강검진사업	8	0	본예산	8	8	100.0
<b>합계</b>	<b>21건</b>	<b>1,657</b>	<b>10,898</b>		<b>12,555</b>	<b>12,555</b>	<b>100.0</b>

- 2020회계연도 사업 중 추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전액 명시이월한 사업은 총 21건, 125억 5천 5백만 원임.
- 이와 같이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한 사유는 추경 및 특교 교부시기가 늦어짐에 따른 연도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함과 시설사업의 경우 건축심의 및 공모기간 소요로 연도내 사업이 추진될 수 없음에 따른 것임.
- 그러나 특별교부금이 연도말에 교부됨에 따라 매년 사업비를 명시이월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교육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교부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도록 매년 결산검토마다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부시기를 이유로 전액 명시이월하는 사례는 개선되고 있지 않음.
- 더욱이 특교가 아닌 추경을 통한 자체예산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추경의 교부시기를 이유로 사업을 명시이월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시기적으로 긴급한 경우 지정 예산에 수정을 가하도록 한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에 반하여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에 다름이 아님.
- 따라서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 교부시기를 이유로 명시이월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불요불급한 곳에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반복적인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III.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 1.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 가.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599억 3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496억 1천 1백만원보다 103억 2천 7백만원(9.5%) 증가됨.

##### [표-69] 기금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감율
		소계	조성액(증가)	사용액(감소)		
2020	49,611	10,327	14,004	3,677	59,938	20.8
2019	45,291	4,320	7,820	3,501	49,611	9.5
2018	17,889	27,402	28,369	967	45,291	153.2

##### 나. 검토의견

###### 1) 기금결산 총괄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 2020회계연도 기금의 조성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32억 5천 2백만원과 예치금 회수 496억 1천 1백만원, 이자수입 7억 5천 2백

만원에 포함하여 636억 1천 5백만원이며,

기금의 지출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비 18억 5천 2백만원, 시설비 14억 3백만원, 감리비 4억 4백만원, 시설부대비 1천 9백만원과 예치금 590억 9백만원 등 626억 8천 6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2천 9백만원임.

## 2) 수입결산

○ 2020회계연도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의 수입액은 636억 1천 5백만원으로, 당초 수입계획액 633억 7천 1백만원 대비 2억 4천 4백만원 증가(0.4%)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32억 5천 2백만원, 이자수입 7억 5천 2백만원 및 예치금 회수 496억 1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 기금 수입의 수납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당초 수입계획 172억 3천만원에서 39억 7천 8백만원(△23.1%) 감소한 132억 5천 2백만원인바,

이는 강남구 도곡동 토지매각의 연기 등의 사유로 인해 당초 수입계획 대비 49억 5천 1백만원 감소<sup>24)</sup>한 반면 제기동 705-10의 매매계약 등 공유재산 처분 대금이 증가(9억 7천 3백만원)한 것에 따른 것임.

○ 또한 이자수입은 당초 수입계획보다 1억 6천 9백만원(29.0%) 증가한 7억 5천 2백만원인바, 이는 예치금회수액이 당초 계획보다 40억 5천 2백만원(8.9%)이 증가함에 따른 것임.

○ 서울시교육청은 기금설치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유재산의 매각 등 당초 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24) 2020.12.16.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의안번호 2038)



기해야 할 것이며, 공유재산의 매각 지연으로 인한 기금의 부족으로 공기가 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표-70] 기금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 재원	수입계획 (A)	수납액 (B)	증감액 (B-A)	주요 증감사유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7,230	13,252	△3,978	강남구 도곡동 토지매각 지연
예치금회수	45,558	49,611	4,053	사업 추진 지연
기금운용수익 (이자수입)	583	752	169	은행의 이자수익률 변경
계	63,371	63,615	<b>244</b>	

### 3) 지출결산

- 2020회계연도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의 지출액은 626억 8천 6백만원으로 당초 지출계획액 대비 9억 9천 9백만원(1.6%) 감소하였는바, 주요 감소 내역은 각각 시설비 8억 7천 5백만원, 감리비 7천 3백만원 및 예치금 5천 1백만원임.
- 특히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지출계획액 636억 8천 5백만원의 1.5%인 9억 2천 9백만원으로, 이는 시설비 8억 5천 6백만원과 감리비 7천 3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 이는 신청사 지열천공 및 지중열교환기의 설치공사를 위한 용산구청의 착공 인허가 처리의 지연과 문화재 발굴조사 등에 따른 공사일정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설치공사와 감리비 등 시설공사의 추진일정이 지연됨에 따른 것임.

○ 따라서 2020회계연도 기금의 지출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원만한 사업추진과 동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4조<sup>25)</sup>에 따른 기금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 한편, 동 기금은 신청사 건립 이외에 연수원의 건립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동 기금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개정<sup>26)</sup>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연수원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의 계획을 백지화하고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동 기금에 따른 교육연수원 설립의 추진방향과 지속성 여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71] 신청사 건립 지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출계획	지출액	이월액
설계비	1,852	1,852	0
시설비	2,278	1,403	856
감리비	477	404	73
시설부대비	19	19	0
계	4,626	3,678	929

25)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건립에 필요한 경비

26) 2020.12.16.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의안번호 2036)

## 2.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결산 승인안

### 가. 주요내용

- 2020회계연도 기금의 조성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이며, 기금의 지출은 예치금 10억원임.

(단위 : 천원)

기금명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소계	조성액(증가)	사용액(감소)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0	1,000,000	1,000,000	0	1,000,000

### 나. 검토의견

#### 1) 기금결산 총괄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근거하여 교육청과 서울시민의 남북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  
  
2020회계연도 기금의 조성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이며, 기금의 지출은 예치금 10억원임.

#### 2) 수입결산

- 2020회계연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수입액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0억원임.
- 동 기금은 2020년도에 설치·운영되어 당해 연도에 이자수익은 없었으며, 금리 및 지출을 고려하여 기금의 정기 예금 예치 기간 등을 정해 적절하게 운용하여 기금 운용 수익률을 제고해야 할 것임.

### 3) 지출결산

- 2020회계연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지출액은 예치금 10억원임.
-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비로 3억 5천 4백만원을 지출할 예정이었으나, 남북관계의 불확실성 지속 및 코로나19 확산 등 대내외적 환경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였음.
-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이 의회에 제출한 2020회계연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2020년 12월 16일 의결되었는바, 결산상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표-72]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2020. 12. 16. 의결)

(단위: 천원)

수입계획			
구분	당초계획 (A)	변경 (B)	증감 (B-A)
계	1,000,000	1,000,000	-
교 특 회 계 전 입 금	1,000,000	1,000,000	-
이 자 수 입	-	-	-
예 치 금 수 회	-	-	-

지출계획			
구분	당초계획 (A)	변경 (B)	증감 (B-A)
계	1,000,000	1,000,000	-
교 수 - 학 습 활 등 지 원	1,000,000	-	△1,000,000
남북교육교류 협력 사업	353,600	-	△353,600
예 치 금	646,400	-	△646,400
예비비 및 기타 (예치금)	-	1,000,000	1,000,000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불확실한 남북관계 상황에서 “북한체험학습추진” 과 같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계획하기 보다는 정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준비하는 사업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여 사업 실행을 위한 환경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표-73] 당초 기금 지출계획(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사업내역	지출예정액(천원)
북한체험학습추진 <sup>27)</sup>	100,000
- 위원회 참석 수당	2,800
- 업무추진비	800
- 남북교육교류국외여비	50,000
남북교육교류사업 <sup>28)</sup>	200,000
계	353,600

### 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 등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동 기금은 경제여건에 따른 재정수입의 불안정성을 보완하여 재원 확보의 안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동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정<sup>29)</sup>을 통해 설치 근거는 마련하였으나, 기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동 기금은 아직 설치되지 않은 미설치 기금이며, 기금 결산승인안의 전제가 되는 기금운용계획안 조차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에서 삭제되어야 함.
- 이처럼 아직 설치도 되어 있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기금을 동 기금 결산승인안 포함시킨 것은 기금관리의 안이함을 나타내준다고 할 수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기금관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27) 금강산, 개성 등 북한 관광 재개 대비(교원 사전답사단 파견 및 학생 참여 시범 사업 추진).

28) 유관기관 및 타부서 등과 협력하여 남북교육교류 사업 지원.

29) 2020.06.3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1522)

## IV.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 1. 주요내용

-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연도말 현재액은 80억 6천 2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말 현재액 70억 1천 9백만원 대비 14.8%인 10억 4천 3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임.

[표-74]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조성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 연도말 현재액
		소계	조성액(증가)	사용액(감소)	
2020	7,019	△1,043	7,265	6,222	8,062
2019	8,658	△1,639	6,608	8,247	7,019
2018	10,686	△2,028	5,869	7,897	8,658

### 2. 검토의견

#### 가. 기금결산 총괄

-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sup>30)</sup>에 따라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같은 법 제54조<sup>31)</sup>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영하

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3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기금의 관리·운영)

① 기금은 공제회\*가 관리·운영한다.

는 기금임.

- 2020회계연도 기금의 조성액은 전년도 기금 조성액 70억 1천 9백만원보다 10억 4천 3백만원이 증가한 80억 6천 2백만원이며, 당해연도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각각 142억 8천 4백만원임.

**[표-75] 공제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수입					지출				
항 목	계획액 ①	결산액 ②	증 감(②-①)		항 목	계획액 ③	결산액 ④	증 감(④-③)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14,102	14,284	182	101	합 계	14,414	14,284	△130	99.1
전입금 및 보조금	0	0	0	0	비용자성 사업비	8,348	5,073	△3,275	60.8
예치금	6,640	7,019	379	106	인력운영비	1,291	946	△345	73.3
이자 수입	105	217	112	206.5	기본경비 (구 물건비)	385	203	△182	52.7
기타 수입	7,357	7,048	△309	95.8	예치금 (차기월금)	4,390	8,062	3,672	183.7

**나. 수입결산**

- 2020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수납액(수입결산액)은 142억 8천 4백만원으로, 수입계획액 대비 1억 8천 2백만원(0.1%)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9년 예치금 70억 1천 9백만원과 2020년 당해연도 기금 조성액 72억 6천 5백만원으로 구성됨.
- 2020년도 기금 조성액은 수입계획액 대비 5억 4천 7백만원(7.0%) 감소한 72억 6천 5백만원으로, 공제료 수입은 수입계획액 대비 1억 7천 6백만원(2.5%) 감소한 67억 6천 3백만원, 보조금은 수입계획

\* 공제회 : 같은 법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액과 동일한 2천 4백만원하며, 이자수입은 수입계획액 대비 1억 1천 2백만원(51.6%) 증가한 2억 1천 7백만원임.

또한 기타 수입은 수입계획액 대비 1억 2천 6백만원(32.7%) 감소한 2억 5천 9백만원으로, 그 구성은 소방수익금이 수입계획액 대비 1억 3천만원(44.8%) 감소한 1억 6천만원이고, 학교폭력구상금이 4백만원(4.2%) 증가한 9천 9백만원임.

[표-76] 기금 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수입 계획액	수입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수납율(%)	2019년도 수입액	
<b>합 계</b>		<b>14,093</b>	<b>14,406</b>	<b>14,284</b>	<b>14,284</b>	<b>99.1</b>	<b>15,266</b>	
소 계		6,939	6,939	6,764	6,764	97.5	6,075	
전입금	공제료 수입	유치원	230	230	189	189	81.7	174
		초등학교	1,882	1,882	1,797	1,797	95.5	1,686
		중학교	1,977	1,977	1,954	1,954	98.8	1,665
		고등학교	2,730	2,730	2,676	2,676	98.0	2,418
		기타학교	120	120	148	148	123.3	132
소 계		24	24	24	24	100.0	284	
보조금	교육활동참여자공 제료지원금	24	24	24	24	100.0	113	
	교육활동참여자 보상비 부족분 지원금	0	0	0	0	-	0	
	교육감 판결금 정산금	0	0	0	0	-	171	
소 계		105	105	217	217	206.7	85	
이자 수입	이자수입	105	105	217	217	206.7	85	
소 계		385	385	260	260	67.3	164	
기타 수입	사업수익금(소방)	290	290	160	160	55.2	120	



구분		수입 계획액	수입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수납율(%)	2019년도 수입액
	학교폭력구상금	95	95	100	100	104.2	44
소 계		6,640	6,953	7,019	7,019	100.9	8,658
전년도 이월금 (사고 등)	공제사업이월금	5,148	5,461	5,382	5,382	98.6	6,935
	상담지원이월금	87	87	147	147	169.0	156
	학교폭력이월금	1,405	1,405	1,490	1,490	106.0	1,567

○ 2020년도 전입금은 공제료 산정기준 단가가 전년도 보다 인상되었음에도<sup>32)</sup> 불구하고, 학생수 감소로 인해 수입계획대비 1억 4천 6백만원(2.5%) 감소한 67억 9천 3백만원임.

- 이와 같은 공제료 수입계획과 수입결산의 차이는 공제회에서 수입계획을 수립할 당시 교육청에서 일괄 납부하는 학생에 대한 예상치를 통보받아 작성이 되나, 이를 제외한 개별 납부학교<sup>33)</sup>는 공제회 자체적으로 학생수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산출함에 따라 발생한 것임.
- 따라서 공제회는 개별 납부학교의 공제료를 산출할 경우 개별 학교의 연도별 전출입 추세, 교육환경의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와 같은 수입계획과 결산액이 불일치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32) 2020년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산정기준 고시(학생1인당 공제료, 교육부고시 제2019-201호)

(단위 : 원)

회계연도	유	초	중	고	평균
2020	2,530	4,400	9,350	11,550	6,958
2019	2,250	3,990	7,980	9,870	6,023
2018	1,950	3,390	6,890	8,550	5,195

33) 교육청 일괄납부 대상 : 교육청에서 학생수 산출하여 일괄납부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교육청 일괄납부 제외 :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재학생수만큼 납부

- 국립학교, 사립유치원, 사립초등학교, 사립국제중학교, 사립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등

[표-77] 학교급별 공제료 수입계획 대비 결산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20 계획(A)		2020 결산(B)		증감(B-A)	
	가입인원수	공제료수입	가입인원수	공제료수입	가입인원수	공제료수입
계	982,129	6,939	940,977	6,763	△41,152	△176
유치원	90,804	230	74,466	188	△16,338	△42
초등학교	427,628	1,882	408,363	1,797	△19,265	△85
중학교	211,482	1,977	208,822	1,954	△2,660	△23
고등학교	236,386	2,730	231,718	2,676	△4,668	△54
기타학교	15,829	120	17,608	148	1,779	28

- 한편 이자수입은 수입계획액 대비 1억 1천 2백만원(206.7%) 증가한 2억 1천 7백만원인바, 이는 만기도래 금융상품으로 인한 예금이자가 증가한 것으로 2019년과 비교하여 1억 3천 2백만원이 증가한 수준임.

현재 공제회 기금에 대한 고갈 우려가 가중되고 있고, 자체사업 발굴을 통한 수입 증대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기금 금고를 고이율 금융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 지출결산**

- 동 기금의 지출액은 142억 8천 4백만원으로, 지출계획현액 144억 1천 4백만원 대비 1억 3천만원(0.9%) 감소한 것임.
-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차기이월금 80억 6천 2백만원을 제외한 2020년도 지출액은 62억 2천 2백만원으로, 공제사업비 44억 9천 4백만원, 예방사업비 3억 7천 7백만원,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비 6백만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1억 9천 5백만원, 인건비 9억 4천 6백

만원, 업무추진비 1천 9백만원, 일반운영비 1억 8천 4백만원 등임.

[표-78] 기금 지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목		지출 계획액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지출 비율	이월액	2019년도 결산액	
합계		14,102	14,414	14,284	99.1	313	15,266	
비용 자 성 사 업 비	공 제 사 업 비	소계	7,227	7,227	4,494	62.9		6,418
		공제급여 (사고보상비)	6,849	6,849	4,265	62.3		6,162
		전문가위탁	40	40	29	72.5		-
		보상심사위원회	25	25	9	36.0		33
		소송업무	164	164	130	79.3		201
		비용의 보전	42	42	5	11.9		23
		판결금지원	50	50	0	0		-
		중앙회분담금	57	57	56	98.2		-
	예방사업비	489	791	377	47.7	303	263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비	71	71	6	8.5		10	
	학교폭력 피해지원	255	255	195	76.5		135	
	교직원 온라인 상담창구	4	4	0.3	7.5		-	
	인 건 비	인 건 비	1,291	1,291	946	73.3		1,110
	기 본 경 비	업무추진비	24	24	19	79.2		33
일반운영비		351	361	184	54.0	10	277	
차기이월금		4,390	4,390	8,062	183.6		7,019	

### 1) 공제사업비

- 공제급여는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 및 관련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지출계획현액 68억 4천 9백만원 대비

62.3%인 42억 6천 5백만원을 지출하였음.

- 이와 같이 지급률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미등교로 안전사고가 감소하였고, 공제급여 중 간병급여와 위로금<sup>34)</sup>에 대한 지급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주된 요인임.
- 한편 공제급여 중 요양급여는 지급건수가 전년도 39,000건 대비 5,904건으로 대폭 감소함에 따라 지출계획현액 대비 22억 5천 5백만원(51%) 감소한 21억 6천 5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장해급여는 지급건수가 전년도 22건 대비 40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출계획액 대비 1억 2천 3백만원(6%) 감소한 18억 1백만원을 지출하였음.
- 다만 장해급여와 관련하여 비록 지출액의 감소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공제회의 설립 취지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는 점에서 재정적 측면과 보상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공제료 운용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79] 공제급여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지출 계획액	지출 계획현액	지출액	지출 비율(%)	지출액 증감	2019년 결산액
합계		7,227	7,227	4,494	62.2%	△2,733	6,418
공 제 사 업 비	소 계	6,849	6,849	4,265	62.3%	△2,584	5,879
	요양급여	4,420	4,420	2,255	51.0%	△2,165	4,223
	장해급여	1,924	1,924	1,801	93.6%	△123	1,939
	간병급여	15	15	0	-	△15	0

34) 2019년에도 간병급여와 위로금에 대한 지급건은 발생하지 않았음

과 목		지출 계획액	지출 계획현액	지출액	지출 비율(%)	지출액 증감	2019년 결산액
	유족급여	450	450	209	46.4%	△241	0
	위로금	40	40	0	-	△40	0
보상심사 위원회	<b>소 계</b>	<b>25</b>	<b>25</b>	<b>9</b>	<b>36.0%</b>	<b>△16</b>	<b>33</b>
	운영비	22	22	9	41.0%	△13	33
	업무추진비	3	3	0.2	6.7%	△2.8	
소송업무	<b>소 계</b>	<b>164</b>	<b>164</b>	<b>130</b>	<b>79.3%</b>	<b>△34</b>	<b>201</b>
	소송선임료등	164	164	130	79.3%	△34	201
비용의 보전	비용의 보전	42	42	5	11.9%	△59	23
전문가 위탁	운영비	40	40	29	72.5%	△11	-
판결금 지원	보전금	50	50	0	-	△50	-
중앙회 분담금	운영비	57	57	56	98.2%	△1	-

[표-80] 2020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소송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소송건수	공제급여 지급(청구)액					
		계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소송완료	2	113	3	110	-	0	-
소송 중	19	2,141	-	1,661	-	481	-

## 2) 예방사업비

- 예방사업비는 지출계획액 4억 8천 9백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3억 3백만원을 포함한 지출계획현액 7억 9천 1백만원 대비 47.7%인 3억 7천 7백만원이 지출되었음.

이 중 전년도 이월금 3억 3백만원은 현재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제급여 관리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에 따른 시스템 구축 비용 2억 6천 5백만원(84.9%)과 기타 홍보 및 달력제작비 4천 7백만원(15.1%)임.

- 그러나 공제급여관리시스템 구축 비용은 이미 2018년과 2019년에도 동일한 세부사업들이 관행적으로 이월되고 있는바, 이월은 예산사용의 예외적인 것으로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공제회는 사업의 연속성 및 부득이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당해연도에 사업이 지속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가능한 사업 종결 후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업을 재편성하는 것이 재정의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3) 학교 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비

- 학교 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비는 지출계획액 7천 1백만원 대비 8.5%인 6백만원을 지출하였는바, 동 사업은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의 3년간 상담 및 심리지원 실적은 7건(2017년에는 1건, 2018년 3건, 2019년 3건)으

로 매년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음.

[표-81]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비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	지원건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률
2020	4	71,000	6,000	65,000	91.5
2019	3	71,000	10,000	61,000	85.9
2018	3	160,000	7,000	153,000	95.6
2017	1	168,000	5,000	163,000	97.0

- 2020회계연도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은 그 실적이 4건(300백만원)에 불과하여 불용률이 91%에 달하고 있는바,<sup>35)</sup> 서울시교육청과 공제회는 법적으로<sup>36)</sup> 상담지원이 의무화되어 있는 만큼 동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그동안의 실적 등을 감안하여 과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 추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5) 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비 지출액 6백만원 중 실제 지원비 3백만원을 제외한 3백만원은 홍보비와 회의비로 지출되었음.

3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V.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1. 주요내용

-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집행현황은 사용결정액 148억 5백만원 대비 지출액은 131억 6천 7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4천 4백만원이고, 사용결정액 중 집행잔액은 8억 9천 4백만원임.

### 2. 검토의견

#### 가. 결산총괄

- 202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77억 7천 2백만원으로 총 42건의 사업에 148억 5백만원을 사용결정하여 131억 6천 7백만원(88.9%)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4천 4백만원, 집행잔액은 사용결정액 대비 6.0%인 8억 9천 4백만원임.

#### 나. 지출결산

##### 1) 예비비 지출 내역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 제129조<sup>37)</sup> 및 「지방재정법」 제43조<sup>38)</sup>), 이와 같은 예비비는 예산운용에 탄력성

37)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8)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편의적인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고, 천재지변 등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함.

- 2020회계연도의 예비비 사용결정액은 전년도(85억 4천 7백만원) 대비 62억 5천 8백만원(73.2%) 증가하였는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긴급 방역물품의 구입과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방수공사 지원 등이 주요 증가 원인임.

[표-82] 예비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건)

회계연도	예산액	예비비 사용 내역				
		건수	사용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2020	17,772	42	14,805	13,167	744	894
2019	17,570	29	8,547	7,521	296	730
증감	202	18	6,258	5,646	448	164

- 예비비의 주요 사용 내역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2건(31억 5천 1백만원, 23.9%), 학교보건관리 8건(31억 2천 2백만원, 23.7%), 교과서지원 1건(17억 1천 7백만원, 13%),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1건(13억 2백만원, 9.9%), 방과후 학교운영 2건(11억 7천 1백만원, 8.9%) 등 총 42건으로,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위험시설의 예방을 통한 학생 감염병 예방 및 안전사고의 예방적 차원에서 지출된 것으로 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비 집행의 제도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는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 됨.

- 다만 학교시설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평소에 안전점검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시설보수가 필요한 사업예산은 미리 편성하도록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음.
- 한편 ‘공유재산 사용자 지원에 따른 사용료 반환금’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서관·평생학습관 등을 휴관조치함에 따라 해당 기관의 공유재산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를 지원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3차례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해 준 것으로, 이는 감염병이라는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인바, 예비비 집행을 위한 요건에 별도의 문제는 없다 할 것임.
- 다만, 당초 예비비 지출을 위한 사용계획 수립시 11개 기관 총 1억 8백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1차 지원), 실제 사용료 반환에 지출된 예비비는 1억 1천 5백만원으로 7백만원의 예비비가 추가적으로 사용되었음.
- 더욱이 동일한 목적으로 연도말에도 예비비를 집행하였는바, 이때의 사업은 1차 지원과 달리 사용결정액 대비 15.2%의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추가적 지출 및 불용의 발생은 한정적 재원인 예비비의 사용계획 수립시 면밀한 사업 검토를 통해 정확한 예산을 추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서울시교육청은 예비비 사용결정 단계에서부터 지출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예비비의 추가 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표-83] 공유재산 사용료반환 지원을 위한 예비비 목록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용 결정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지출결정 승인일자	지출결정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49,314	49,314	0	0	2020-06-22	공유재산 사용자 지원에 따른 사용료반환금(남산도서관)
공유재산및물품관리	107,839	114,883	0	△7,044	2020-08-27	공유재산 사용자 지원에 따른 사용료반환금 (강남도서관 등 11개 기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51,755	43,899	0	7,856	2020-12-23	공유재산 사용자 지원에 따른 사용료반환금(2차) (노원평생학습관 등 14개 기관)
합계	208,908	208,096	0	812		

○ 더불어 2020년도는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및 재난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의 지출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예전과 달리 4차례의 추경을 통해 예산을 경정하였다는 측면에서 학교시설에 대한 교육환경개선비용 등은 예비비가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이라 사료됨.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긴급히 발생하는 재해나 재난, 그리고 예측불가능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의 편성취지를 희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표-84] 예비비로 지출한 사업 일부 목록

(단위 : %, 천원)

사업명	사용 결정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지출결정 승인일자	지출결정사유
학교시설	1,031,240	833,118	0	198,122	2020-01-30	송정중 위험시설 개선

사업명	사용 결정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지출결정 승인일자	지출결정사유
교육환경개선						서진학교 안전시설 보강
학교보건관리	633,772	611,577	0	22,195	2020-02-18	감염병 예방 방역물품 지원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1,301,580	1,301,523	0	57	2020-03-12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등 방역 소독
학교보건관리	83,643	83,643	0	0	2020-03-13	유치원 방역 소독
교수학습지원 센터운영	505,359	462,778	0	42,581	2020-03-13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및 교수학습 지원 서비스 개선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164,527	164,527	0	0	2020-03-13	송곡여중 옹벽보수 보강 및 기타공사
유치원방과후 과정운영	444,900	444,900	0	0	2020-03-17	유치원 긴급돌봄 급간식 운영비
학교보건관리	14,040	12,350	0	1,690	2020-03-17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교육자료 제작
학교보건관리	505,500	504,500	0	1,000	2020-03-23	학교 체육관 방역소독비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27,500	27,500	0	0	2020-03-23	학교 수영장 방역소독비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38,500	38,500	0	0	2020-04-02	한강미디어교 변압기 교체 및 전기수전시설 정비 보수
특수교육교수 학습지원	104,800	76,505	0	28,295	2020-04-08	청각장애학생 온라인수업 문자통역지원
법무관리	15,953	15,953	0	0	2020-04-09	강남서초 학원관련 행정소송비용
정보보안관리	600,000	500,933	0	99,067	2020-04-17	학교 무선인프라 긴급 구축
학교보건관리	765,000	765,000	0	0	2020-04-23	학생 비축용 보건마스크 지원
법무관리	357,341	356,520	0	821	2020-05-18	가재울뉴타운3구역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비
학교보건관리	678,438	645,706	0	32,732	2020-05-29	코로나19 긴급 대응 의료 인력 지원
학교보건관리	320,092	320,092	0	0	2020-06-12	코로나19 긴급 대응 의료 인력 추가 지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49,314	49,314	0	0	2020-06-22	공유재산 사용자 지원에 따른 사용료반환금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100,000	94,909	0	5,091	2020-07-03	목동고 전기설비 개선
법무관리	85,692	85,662	0	30	2020-07-14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84,240	79,758	0	4,482	2020-08-24	독립문초 교사동 옥상 방수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418,360	374,235	0	44,125	2020-08-24	개운중 교사동 옥상 및 외벽방수
공유재산및물 품관리	107,839	114,883	0	△7,044	2020-08-27	공유재산 사용자 지원에 따른 사용료반환금

사업명	사용 결정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지출결정 승인일자	지출결정사유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820,440	746,367	0	74,073	2020-08-27	길음초 교사동 옥상 및 외벽방수 정릉초 옥상 및 외벽 방수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509,880	112,478	337,139	60,263	2020-08-31	경기여고 체육관 외벽 보수 방현초 본관동 옥상방수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53,820	50,100	0	3,720	2020-09-02	이태원초 후관동 옥상 방수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74,880	2,021	69,001	3,858	2020-09-03	청량고 본관동 옥상 방수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348,880	9,106	110,145	229,629	2020-09-03	전농중 교사동 방수 공사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149,760	140,873	0	8,887	2020-09-04	송파중 후관동 및 식당 방수 한산초 교사동 방수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105,000	94,398	0	10,602	2020-09-11	금곡여고 정보관동 방수 공사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190,000	190,000	0	0	2020-10-12	등촌초 옹벽 보강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72,380	72,380	0	0	2020-10-13	구로초 강당 옥상방수 신영초 교사동 방수
방과후학교운영	976,000	969,600	0	6,400	2020-10-20	외국국적 학생 아동양육 한시 지원
학교보건관리	178,702	178,702	0	0	2020-10-23	코로나19 자가진단 시스템 사용비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353,900	148,110	203,518	2,272	2020-10-26	연천초 교사동 옥상방수 연서중 정보관 등 방수공사
방과후학교운영	204,600	201,000	0	3,600	2020-11-04	외국국적 학생 아동양육 한시 지원 (학교밖외국국적아동 및 공립학교재학생)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72,000	47,924	24,076	0	2020-11-04	승강기 교체
영재교육원운영	125,168	115,513	0	9,655	2020-12-08	영재선발 방역 지원
교과서지원	1,716,823	1,716,822	0	1	2020-12-18	교과용도서 소송 관련 공급가격 차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51,755	43,899	0	7,856	2020-12-23	공유재산 사용자 지원에 따른 사용료반환금(2차)
교원인건비	363,713	363,670	0	43	2020-12-24	직권면직 취소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 2) 예비비 지출 사업의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

-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중 5건의 사업은 총 13억 6천만원  
이 예비비 사용결정 후 23.5%인 3억 2천만원만 지출되고, 7억 7천

4백만원(54.7%)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됨.

- 이처럼 사고이월된 사업은 장마철 집중호우 발생에 따른 누수발생으로 인한 긴급 보수 및 승강기 노후화에 따른 긴급 교체 등의 사유로 예비비 사용결정이 이루어진 것임.

[표-85] 예비비 이월 내역

(단위 : %, 천원)

사업명	사용 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지출결정 승인일자	지출결정사유
경기여고 체육관 외벽 보수	400,000	15,140	337,139	47,720	2020-08-31	장마철 집중호우 관련 예비비 지원
청량고 본관동 옥상 방수	74,880	2,021	69,001	3,858	2020-09-03	장마철 누수 발생으로 인하여 옥상 방수공사 긴급 필요
전농중 교사동 방수 공사	348,880	9,106	110,145	229,629	2020-09-03	장마철 집중호우로 교실 누수가 발생하여 긴급 보수 필요
연서중 정보관 등 방수공사	213,500	8,317	203,518	1,665	2020-10-26	장마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긴급한 방수공사 필요
서부교육지원청 승강기 교체	72,000	47,924	24,076	0	2020-11-04	승강기 정밀안전점검 결과 보완기간 내에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교직원 및 민원인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승강기 교체 예비비 지원

- 그러나 예비비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안일 경우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연서중 정보관 방수공사를 제외한 4건의 사업은 겨울방학 또는 다음연도에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사업비를 사고 이월하였으며,

서부교육지원청의 승강기 교체의 건은 사전검토 및 사전절차 등의 시일이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연내 공사를 할 수 없어 사업비의 상당부분을 사고 이월한 것임.

- 이와 같이 실제 긴급성을 요하지 않은 예비비의 사용결정은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는 예비비 사용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전검토 부족으로 인한 예비비의 이월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적 사유인 이월제도를 남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예비비 지출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전농중 교사동 방수 공사의 경우 장마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누수발생으로 교사동 건물의 방수공사의 긴급성으로 3억 4천 9백만원 지원하였으나, 9백만원만 지출하고, 1억 1천만원은 사고이월 했으며, 사용결정액 대비 65.8%인 2억 3천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 이와 같은 예비비 지원액의 65.8%를 불용시킨 것은 긴급사안에 대한 지원이라는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예비비 집행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한정적 재원인 예비비를 무분별하게 배정한 것이 원인인바, 서울시교육청은 예비비 지출결정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표-86] 예비비 이월 사유

(단위 : %, 천원)

사업명	지출원인행위일	이월 사유
경기여고 체육관 외벽 보수	2020-09-11	수능시험 실시 학교로 학사일정 반영하여 겨울방학기간 공사 추진
청량고 본관동 옥상 방수	2020-09-14	동절기공사 중지에 따라 2021년 공사시행
전농중 교사동 방수 공사	2020-09-14	동절기공사 중지에 따라 2021년 공사시행
연서중 정보관 등 방수공사	2020-10-26	12월 말 준공(12.30.예정)으로 연내지출 불가에 따른 이월
서부교육지원청 승강기 교체	2020-11-04	승강기 노후로 인한 긴급교체 공사 실시건으로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선정 승강기 디자인선정 및 가능 검토 등의 시간이 필요하고, 승강기 제작 및 교체공사의 실시 승강기안전관리공단의 사용검사 및 승인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연내 공사완료 불가로 인한

-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등 4건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